



성남북정2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원

■ 공급대상 : 892호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594세대 [전용면적 55㎡ 558세대, 56㎡ 36세대]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시, 신청 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청약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재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부적격 처리 혹은 불이익 부과)되며,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자격상향지원 등)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신혼희망타운의 각 유형(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별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에 유의)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세대 1인 및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우리 공사에서는 계약자의 자금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본 주택의 첫 중도금 납기를 감안하여 금융기관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며, 협약체결이 완료되는 대로 계약자에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 주체의 중도금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금회 공급하는 성남북정2 A1블록 892세대 중 594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298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8.10.(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6820008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요]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 내 신청타입별로([주택형 55] : 055.9700A/055.9700B/055.9800C, [주택형 56] : 056.9400T, 서로 다른 주택형 중복 신청 불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각 주택타입별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한 주택타입에 따라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됩니다.**

■ 주택전시관 관람 안내

- 사전청약 당첨자 :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택전시관을 '26.08.21.(금) ~ 08.24.(월) (10:00~17:00) 4일간 사전공개합니다. (일반고객 관람 불가, 사전예약제)
- 일반고객 : '26.08.25.(화) ~ 08.30.(일) (10:00~17:00) 6일간 공개합니다.
- **[중요] 주택전시관 내 견본주택은 55A, 55B 타입이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되지 않은 55C, 56T타입은 반드시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전시관 관람이 어려울 경우에도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팸플릿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관람 일정(2026년)

대 상	구 분	방문 일정	주 소	기 타
사전청약 당첨자	사전청약 당첨자 사전관람 (사전예약 필수, 일반고객 관람 불가)	08.21.(금) ~ 08.24.(월) (10:00 ~ 17:00)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941-1 문의 : ☎ 031-699-2006	* 기간 내 주말 관람 가능 * 관람 및 상담 시 대기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차공간 협소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일반고객 (사전청약 당첨자 포함)	일반관람 (별도 예약 없이 관람가능)	08.25.(화) ~ 08.30.(일) (10:00 ~ 17:00)		
사이버 견본주택				

lhbj2-a1.co.kr

- (사전청약 당첨자 관람 예약) 사전청약 당첨자는 주택전시관 관람을 원하실 경우, 관람예약기간 ['26.08.12.(수) 10:00 ~ 08.19.(수) 16:00] 내에 사이버 견본주택 (lhbj2-a1.co.kr)의 팝업을 통해 관람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예약팝업의 경우, 관람예약기간에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 청약 전 반드시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 견본주택 내 실제 건립세대 촬영 영상 및 타입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시고, 실물 견본 세대를 관람하지 못하고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것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에는 'LH' 단독 또는 'LH'+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단지별 브랜드'는 입주 전에 단지특성 및 입주 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단지별 브랜드로 시공사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입주예정자는 상표권자인 시공사의 사용 승낙을 득하여 우리공사에 제안하여야 하며, 제안 브랜드에 대한 입주예정자 설문조사 진행 후 선정됩니다. 제안서 접수 등 브랜드 선정에 관련한 사항은 입주 전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2026년)

공 고	접 수				당첨자 발표	당첨자/예비자 서류접수	선택품목 결정 (발코니확장 외)	계약 체결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신규신청)				전 자	현 장
	주택타입 선택	주택타입 발표	본청약 신청포기						
08.10. (월)	08.31.(월) 10:00 ~09.01.(화) 17:00	09.02.(수) (14:00)	09.03.(목) 10:00 ~09.04.(금) 17:00	09.07.(월) 10:00 ~09.08.(화) 17:00	09.17.(목) 14:00 이후	09.29.(화) ~10.01(목) (10:00~17:00)	11.30.(월) 10:00 ~12.01.(화) 16:00	12.07.(월) ~12.08.(화) (10:00~16:00)	12.09.(수) ~12.10.(목) (10:00~16:00)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접수기간 중 야간(17:00~10:00)에도 청약가능함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주택전시관

※ 56T 계약자의 경우, 문자형 호수(예시: T101호)로 인해 전자계약 시스템 전송이 불가하여 **현장계약만 체결가능합니다.**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성남북정2 A1블록 주택전시관(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941-1)

■ (사전청약 당첨자) 사전청약 당첨자가 주택타입 선택일에 본청약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로서 본청약 접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주택타입 선택일에 본청약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신청포기일에 신청포기하지 않을 경우, 본청약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자 발표일 이후 청약통장 사용 등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인터넷 청약)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시 인증서가 필요하오니 신청접수일 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KB부동산 웹/앱을 통해서도 청약신청 및 신청내역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접속경로 : KB부동산 웹/앱 접속 → 메뉴 → 공공주택 → LH청약전용관)

■ (청약통장) 종전 통장(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해당 주택에 신청하고자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2026.08.09.)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전환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실적이 각 공급유형별 입주자저축 요건 및 배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0.) 이후 종전 통장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순위확인)이 불가하며 추첨대상에서 제외**] 이 때,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청약저축 기 납입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며, 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한 날부터 납입실적을 인정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본 아파트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 기준은 11페이지 Ⅱ. 신청기준(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및 16페이지 Ⅲ.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신청자격	기본요건	주택·소득·자산 등의 자격검증 범위
신 혼 부 부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를 둔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단, 입주 전에 해당 주택을 전매하려는 경우에는 전매 전에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함)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신청자가 청약 시 직접 입력)
한 부 모 가 족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부 또는 모	무주택세대구성원(아래 참조)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은 주택소유여부,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11페이지 Ⅱ.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성남시 2년 이상(2024.08.10. 이전) 거주하는 신청자가 성남시 2년 미만(2024.08.11. 이후)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성남시 2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 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1) ‘24.08.10.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2) ‘24.08.10.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대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 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 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며,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에 의거 **거주의무가 3년** 적용됩니다.

구분	기준일(~로부터)	기간	관련 법령
재당첨제한	당첨자 발표일	10년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당첨자 발표일	3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3
거주의무	거주의무 개시일	3년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수정구)은 「주택법」 제63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제63조의2에 의한 **청약과열지역**입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청약과열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무주택세대구성원”(11페이지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참고)과 동일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에서 확인(세대원 각각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외),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신혼희망타운 신청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 ‘2. 특별공급을 받은 분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내지 제47조에 의하여 특별공급 (과거 3자녀 우선공급,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과 납입인정금액,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총자산조치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 및 일반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타입)별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 등·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합니다.
- (전자계약)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 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거나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원하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성남북정2 A1블록 주택 전시관(주소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941-1)에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56T 타입 계약자는 현장계약만 체결가능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 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따라서, **현장계약 체결 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해당 지구는 투기과열지구이므로, 증빙자료 필수 포함)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 전자계약 시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계약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며 **분양계약자가 인지세 전액을 납부**하고, LH는 **인지세 분담액(1/2)을 분양계약자의 잔금에서 차감**합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 기재금액 |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 납부세액 | 2만원 | 4만원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 (공사 임직원 등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관련) 공사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및 임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는 공사 「취업규칙」 및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및 신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선택순 수익계약 또는 명의변경으로 인한 공사 공급 부동산의 취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 제158조에 따른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 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안내

- 개요 :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주택매각금액- 분양금액)의 최소 10%~최대 50%를 기금과 정산하되, 정산시점에 장기대출자 및 유자녀 가구에 혜택 부여
-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의무가입 대상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
- 가입한도 : 최대 4억원(주택 공급가격의 70% 이내)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 대출기간 : 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칙, 중도상환 시에는 전액 상환만 허용
- 대출절차 : **분양계약 체결 → 대출신청(잔금 2~3개월 전) → 대출 심사 및 실행 → 수탁은행에서 대출 결과를 LH에 전송 → LH는 대출 실행 확인 및 입주 허용**
- 문 의 : **우리은행**(1599-0800), **국민은행**(1599-1771), **신한은행**(1599-8000), **HUG**(1566-9009)
- 상세자료 :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내 [개인상품-주택구입자금대출]의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확인

<수익 공유 정산표 일부 발췌>

대출기간 (년)	담보인정비율 70%			담보인정비율 6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5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40% 실행시			담보인정비율 30% 실행시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자녀0	자녀1	자녀2
1~9	50%	40%	30%	45%	35%	25%	40%	30%	20%	35%	25%	15%	30%	20%	10%
14	40%	30%	20%	35%	25%	15%	30%	20%	10%	25%	15%	10%	20%	15%	10%
19	30%	20%	10%	25%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4이상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20%	15%	10%

- ★ 담보인정비율은 70%, 60%, 50%, 40%, 30% 중에서 선택하며, 선택한 담보인정비율 적용 시 가입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한도(최대 4억원)를 기준으로 LTV 비율 및 수익 공유비율이 재적용됩니다.
- ★ 정산비율이 30%인 경우, 매각차익(매도가격-분양가격)의 30%를 기금이 회수합니다.
- ★ 정산 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은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제반 비용(부동산 중개료, 감정평가 수수료,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주택수리비용, 차주가 납부한 기금이자 등은 감안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기상환 시 감정평가 비용은 기금이 부담하나, 대출 개시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감정평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 금회 공급되는 성남북정2 A1블록은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의무 가입 대상이며,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을 대환할 수 없습니다.

I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규모

■ 성남복정2 A1블록 892세대 중 금회 공급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T1~T2층, 1층~18층 22개동 전용면적 60㎡ 이하 594세대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타입	세대당 주택면적(㎡)					발코니		공유 대지 면적 (㎡)	공급 세대수				최고 층수	1층 세대수	입주 예정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계)	확장 여부	면적 (㎡)		합계	금회공급 공공분양		행복주택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				
성남 복정2 A1	합 계										892	428	166	298	18	48	'30.05
	055.9700A	55A	55.9700	27.6788	12.7314	50.1542	146.5344	확장	30.93	63.5690	764	351	145	268	18	41	
	055.9700B	55B	55.9700	27.6788	12.7314	50.1542	146.5344	확장	26.05	63.5690	60	28	12	20	13	4	
	055.9800C	55C	55.9800	27.6838	12.7336	50.1632	146.5606	확장	30.93	63.5803	32	16	6	10	12	3	
	056.9400T	56T	56.9400	28.1585	12.9521	51.0234	149.0740	확장	18.48	64.6707	36	33	3	-	-	-	

- ※ [중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발코니 면적 등 실거주면적은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주택전시관, 사이버 견본주택, 팜플릿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청약 접수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주택형(타입) 선호순위 선택 기간까지 제출 완료)
- ※ 사전청약 당첨자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은 본청약 물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본청약 물량은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금회는 공공분양으로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 주택타입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타입별 신청접수 미달 시에는 향후 재공급합니다.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30년 05월입니다.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1층 세대수는 주거약자용주택(행복주택) 및 가정어린이집으로 우선 배정된 1층 세대수를 제외한 공공분양 최대 배정 가능수입니다.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발코니 확장비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사전청약당첨자 대상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층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 5%	중도금 20%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 시	('29.07.18.)	입주 시	
055.0000	55A	1층	기본형	766,370	38,319	153,274	519,777	55,000
			마이너스옵션	734,424	36,721	146,885	495,818	55,000
		2층	기본형	774,360	38,718	154,872	525,770	55,000
			마이너스옵션	742,414	37,121	148,483	501,810	55,000
		3층	기본형	782,340	39,117	156,468	531,755	55,000
			마이너스옵션	750,394	37,520	150,079	507,795	55,000
		4층	기본형	790,320	39,516	158,064	537,740	55,000
			마이너스옵션	758,374	37,919	151,675	513,780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798,310	39,916	159,662	543,732	55,000
			마이너스옵션	766,364	38,318	153,273	519,773	55,000
	55B	1층	기본형	766,370	38,319	153,274	519,777	55,000
			마이너스옵션	734,424	36,721	146,885	495,818	55,000
		2층	기본형	774,360	38,718	154,872	525,770	55,000
			마이너스옵션	742,414	37,121	148,483	501,810	55,000
		3층	기본형	782,340	39,117	156,468	531,755	55,000
			마이너스옵션	750,394	37,520	150,079	507,795	55,000
		4층	기본형	790,320	39,516	158,064	537,740	55,000
			마이너스옵션	758,374	37,919	151,675	513,780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798,310	39,916	159,662	543,732	55,000
			마이너스옵션	766,364	38,318	153,273	519,773	55,000
	55C	1층	기본형	766,510	38,326	153,302	519,882	55,000
			마이너스옵션	734,558	36,728	146,912	495,918	55,000
		2층	기본형	774,490	38,725	154,898	525,867	55,000
			마이너스옵션	742,538	37,127	148,508	501,903	55,000
		3층	기본형	782,480	39,124	156,496	531,860	55,000
			마이너스옵션	750,528	37,526	150,106	507,896	55,000
		4층	기본형	790,460	39,523	158,092	537,845	55,000
			마이너스옵션	758,508	37,925	151,702	513,881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798,450	39,923	159,690	543,837	55,000
			마이너스옵션	766,498	38,325	153,300	519,873	55,000
056.0000	56T	T1층~ T2층	기본형	812,140	40,607	162,428	554,105	55,000
			마이너스옵션	781,759	39,088	156,352	531,319	55,000

■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대상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단위 : 천원]

주택형	타입	층별	타입별	주택가격	계약금 10%	1차 중도금 10%	2차 중도금 10%	잔금	용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 시	(‘28.03.15.)	(‘29.07.18.)	입주 시	
055.0000	55A	1층	기본형	766,370	76,637	76,637	76,637	481,459	55,000
			마이너스옵션	734,424	73,442	73,442	73,442	459,098	55,000
		2층	기본형	774,360	77,436	77,436	77,436	487,052	55,000
			마이너스옵션	742,414	74,241	74,241	74,241	464,691	55,000
		3층	기본형	782,340	78,234	78,234	78,234	492,638	55,000
			마이너스옵션	750,394	75,039	75,039	75,039	470,277	55,000
		4층	기본형	790,320	79,032	79,032	79,032	498,224	55,000
			마이너스옵션	758,374	75,837	75,837	75,837	475,863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798,310	79,831	79,831	79,831	503,817	55,000
			마이너스옵션	766,364	76,636	76,636	76,636	481,456	55,000
	55B	1층	기본형	766,370	76,637	76,637	76,637	481,459	55,000
			마이너스옵션	734,424	73,442	73,442	73,442	459,098	55,000
		2층	기본형	774,360	77,436	77,436	77,436	487,052	55,000
			마이너스옵션	742,414	74,241	74,241	74,241	464,691	55,000
		3층	기본형	782,340	78,234	78,234	78,234	492,638	55,000
			마이너스옵션	750,394	75,039	75,039	75,039	470,277	55,000
		4층	기본형	790,320	79,032	79,032	79,032	498,224	55,000
			마이너스옵션	758,374	75,837	75,837	75,837	475,863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798,310	79,831	79,831	79,831	503,817	55,000
			마이너스옵션	766,364	76,636	76,636	76,636	481,456	55,000
	55C	1층	기본형	766,510	76,651	76,651	76,651	481,557	55,000
			마이너스옵션	734,558	73,456	73,456	73,456	459,190	55,000
		2층	기본형	774,490	77,449	77,449	77,449	487,143	55,000
			마이너스옵션	742,538	74,254	74,254	74,254	464,776	55,000
		3층	기본형	782,480	78,248	78,248	78,248	492,736	55,000
			마이너스옵션	750,528	75,053	75,053	75,053	470,369	55,000
		4층	기본형	790,460	79,046	79,046	79,046	498,322	55,000
			마이너스옵션	758,508	75,851	75,851	75,851	475,955	55,000
		5층~ 최상층	기본형	798,450	79,845	79,845	79,845	503,915	55,000
			마이너스옵션	766,498	76,650	76,650	76,650	481,548	55,000
056.0000	56T	T1층~ T2층	기본형	812,140	81,214	81,214	81,214	513,498	55,000
			마이너스옵션	781,759	78,176	78,176	78,176	492,231	55,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 향 등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 금액이 적용됩니다.
- ※ **[중요]** 동·호는 당첨자 선정 시 무작위로 배치되며, 분양가는 층별, 타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 전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건본주택 등으로 공급가격, 동·호 배치도, 타입별 평면도 및 면적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인지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 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 시 용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시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한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용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용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용자액(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 마이너스옵션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 포함), 문짝, 문선, 목재공틀, 경첩, 도어체크, 확장형 발코니 출입문, 디지털도어록, 실외기실 문	욕실 목재공틀, 욕실문틀 하부 썬,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PL창호, 주방터닝도어, 실외기실 그릴창호, 일반형도어락, 방화문틀 및 문짝
② 바닥	합판마루, 결레받이, 현관(바닥재, 마루기틀),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방수(방수 시공부위만 해당) 바닥난방 및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경량벽체(방,거실,주방 등 각실을 구분하는 벽체는 제외), 거실(아트월,MDF판,포세린타일,무늬목시트 등) 벽지(초배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등), 목조칸막이벽	시멘트벽돌(시멘트몰탈 또는 석고보드 포함),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 벽 도장, 전기(통신) 배관 및 배선, 배선기구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우물천장, 반자돌림	경량천장틀,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 도장, 설비배관, 소방관련시설, 스피커, 배선기구 전기(통신) 배관 및 배선
⑤ 욕실	천장재(천장틀포함),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액세서리류, 수전류(발코니 수전 포함), 샤워부스, 욕실장, 비데(욕실1, 욕실2), 욕실팬, 욕실벽 및 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 포함), 젠다이 상부 인조대리석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방수, 설비배관, 전기배관 및 배선, 배선기구, IoT 비상호출버튼(부부욕실)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레인지후드,음식물탈수기 등), 기기류(액세서리류 일체), 수전류, 주방벽 타일(타일붙임 몰탈 포함)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 및 배선, 배선기구, 석고보드, 소방관련시설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매입등기구 제외)	전기(통신)배관 및 배선, 배선기구, 매입등기구, 비상등
⑧ 일반가구	신발장, 드레스룸가구, 화장대, 반침가구, 팬트리(문짝),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발코니 선반	-
⑨ 기타	발코니 수전류	에어컨냉매배관(기본형 설치위치), 세대환기시스템, 보일러, 하향식 피난구, 동작감지기, 자석감지기, 스마트 생활정보기,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세대단말기(월패드), 소방관련시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유의사항 안내

- 마이너스옵션은 선택품목 결정기간 내 선택가능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 및 ‘추가선택 품목(불박이장, 바닥재,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 쿡탑, 시스템에어컨 등)’은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내,외부 PL창호가 모두 설치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고령자/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대한 입주자의 시공 · 설치는 잔금을 납부완료하고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에 따른 실내·외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토록 해야합니다.
-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하이브리드쿡탑용으로 기본 설치되며, 변경하고자 할 시 계약자가 레인지후드 사양에 맞게 변경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 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입주자가 선정하여 설치하는 조명기구는 세대단말기(월패드), 배선기구(네트워크스위치)와 연동 문제 및 제품 사양에 따라 조명밝기 조절(디밍) 등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 및 설치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입주자에게 청구될 예정입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 안내

-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주택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됩니다.

[단위 : 천원]

발코니 확장비용		실별 구분 가격						
주택타입	내역	계	거실	침실1	침실2	알파룸	주방/식당	드레스룸
55A	기본공사비(A)	73,856	15,752	14,661	11,654	10,020	15,430	6,338
	확장공사비(B)	80,852	16,751	15,819	12,349	10,632	17,657	7,644
	계약자부담액(B-A)	6,996	998	1,157	695	612	2,227	1,306
	마이너스 옵션 시 계약자 부담액	5,947	849	984	591	520	1,893	1,110
55B	기본공사비(A)	72,744	13,104	20,140	12,626	10,588	16,285	
	확장공사비(B)	78,666	13,954	21,462	13,324	11,193	18,733	
	계약자부담액(B-A)	5,922	850	1,323	698	604	2,448	
	마이너스 옵션 시 계약자 부담액	5,034	722	1,124	593	513	2,081	
55C	기본공사비(A)	74,924	15,795	14,702	11,686	10,048	15,448	7,245
	확장공사비(B)	81,945	16,796	15,861	12,383	10,661	17,674	8,570
	계약자부담액(B-A)	7,022	1,001	1,159	697	614	2,226	1,325
	마이너스 옵션 시 계약자 부담액	5,968	850	985	593	522	1,892	1,126
56T	기본공사비(A)	70,433	20,606	19,976	16,328	13,523		
	확장공사비(B)	74,960	21,681	21,963	17,118	14,199		
	계약자부담액(B-A)	4,527	1,075	1,987	790	676		
	마이너스 옵션 시 계약자 부담액	3,848	914	1,689	671	574		

-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액 계’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액 계’는 산출금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사전청약당첨자 대상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안내(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

[단위 : 천원]

주택타입	구분	발코니확장비용 (계)	계약금 (계약 시)	중도금 (‘29.07.18.)	잔금 (입주 시)
55A	기본형	6,996	500	2,000	4,496
	마이너스옵션	5,947	500	2,000	3,447
55B	기본형	5,922	500	2,000	3,422
	마이너스옵션	5,034	500	2,000	2,534
55C	기본형	7,022	500	2,000	4,522
	마이너스옵션	5,968	500	2,000	3,468
56T	기본형	4,527	500	2,000	2,027
	마이너스옵션	3,848	500	2,000	1,348

■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대상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안내(계약금, 중도금 1차, 중도금 2차, 잔금의 순서로 납부)

[단위 : 천원]

주택타입	구분	발코니확장비용 (계)	계약금 (계약 시)	중도금 1차 (‘28.03.15.)	중도금 2차 (‘29.07.18.)	잔금 (입주 시)
55A	기본형	6,996	1,000	1,000	1,000	3,996
	마이너스옵션	5,947	1,000	1,000	1,000	2,947
55B	기본형	5,922	1,000	1,000	1,000	2,922
	마이너스옵션	5,034	1,000	1,000	1,000	2,034
55C	기본형	7,022	1,000	1,000	1,000	4,022
	마이너스옵션	5,968	1,000	1,000	1,000	2,968
56T	기본형	4,527	1,000	1,000	1,000	1,527
	마이너스옵션	3,848	1,000	1,000	1,000	848

■ 공간선택 안내

-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입주자 생활여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형별로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 공간선택 중 ‘**11**-1 침실2+알파룸 통합’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11**-2 침실2/알파룸 경량벽체 꺾음시공’은 유상으로 진행됩니다. 계약체결 후 변경은 불가하며, 공간선택 시 펌플릿,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은 불가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사항(아래 유형 중 택1)		주택타입	선택 시 납부조건(단위 : 천원)				비 고
기본형	공간확장형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중도금 (‘29.07.18.)	잔금 (입주 시)	
침실2/알파룸 분리	통합형(무상) : 11 -1 침실2+알파룸 통합	55A·55B 55C·56T	무상				기본형, 공간확장형 11 -1, 11 -2 中 1가지 선택 (미선택 시 기본형 설치, 공간확장형 11 -1와 11 -2 중복선택 불가)
	특화형(유상) : 11 -2 침실2/알파룸 경량벽체 꺾음시공	55A	137	7	27	103	
		55B	137	7	27	103	
		55C	137	7	27	103	
		56T	121	6	24	91	

(본청약 당첨자)

선택사항(아래 유형 중 택1)		주택타입	선택 시 납부조건(단위 : 천원)					비 고
기본형	공간확장형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중도금 1차 (‘28.03.15.)	중도금 2차 (‘29.07.18.)	잔금 (입주 시)	
침실2/알파룸 분리	통합형(무상) : 11 -1 침실2+알파룸 통합	55A·55B 55C·56T	무상					기본형, 공간확장형 11 -1, 11 -2 中 1가지 선택 (미선택 시 기본형 설치, 공간확장형 11 -1와 11 -2 중복선택 불가)
	특화형(유상) : 11 -2 침실2/알파룸 경량벽체 꺾음시공	55A	137	14	14	14	95	
		55B	137	14	14	14	95	
		55C	137	14	14	14	95	
		56T	121	12	12	12	85	

■ 추가선택품목 안내 : 불박이장, 바닥재,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 쿨탑, 시스템에어컨 등

-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비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공사별 제반비용(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은 선택 불가합니다.
-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펌플릿, 주택전시관 또는 사이버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는 아래 선택품목 **11** ~ 옵션 끝 번호(타입마다 상이, 55A : **18**, 55B : **16**, 55C : **17**, 56T : **18**)까지 개별 선택이 가능하며, 선택 시 유의사항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 ※ 추가선택품목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이 설치됩니다.
- ※ 적용된 옵션은 성능 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 또는 형태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적용된 옵션은 설치물의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 적용된 옵션은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 타입	공간 선택유형	구분	기본형	선택품목	선택 시 납부조건 (단위:천원)				비고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중도금 (‘29.07.18.)	잔금 (입주 시)	
55A	기본형 및 공간 확장형	현관 구조	현관창고 공간만 제공	11 현관장+복도팬트리	983	49	197	737	가구(시스템선반 등) 미포함
		시스템선반 (현관)	미설치	2 -1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597	30	119	448	2 -1, 2 -2 중 하나만 선택가능 2 -2 : 물품옵션 11 선택 시 선택가능
				2 -2 팬트리 시스템선반 - 물품옵션 11 선택 시	970	49	194	727	
		현관중문	미설치	3 현관중문(3연동슬라이딩도어)	1,340	67	268	1,005	
		주방상판+ 벽+ 아일랜드식탁	MMA(상판)+ 벽(타일), 아일랜드식탁 미설치	4 -1 아일랜드식탁 추가(MMA상판)	1,510	76	302	1,132	4 -1, 4 -2, 4 -3, 4 -4 중 하나만 선택가능 아일랜드식탁 : 고정식(이동불가) 4 -4 : 물품옵션 11 선택 시 선택가능
				4 -2 엔지니어드스톤(상판+벽)	919	46	184	689	
				4 -3 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아일랜드식탁 추가)	2,818	141	564	2,113	
				4 -4 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아일랜드식탁 추가) - 물품옵션 11 선택 시	2,605	130	521	1,954	
		쿨탑	3구형 가스쿨탑	5 -1 쿨탑(하이라이트 1구+인덕션 2구)	530	27	106	397	5 -1, 5 -2 중 하나만 선택가능
				5 -2 쿨탑(인덕션 3구)	550	28	110	412	
		냉장고장	냉장고장+김 치냉장고장	6 -1 냉장고장+키큰장(수납중심형)	311	16	62	233	6 -1, 6 -2 중 하나만 선택가능
				6 -2 냉장고장+키큰장(수납+오픈형)	427	21	85	321	
		드레스룸	미설치 (드레스룸 공간만 제공)	7 -1 침실1 드레스룸(도어 및 경량벽체 설치)	709	35	142	532	7 -1, 7 -2 중 하나만 선택가능
				7 -2 침실1 대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설치)	796	40	159	597	
		시스템선반 (드레스룸)	미설치 (드레스룸 공간만 제공)	8 -1 침실1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1,256	63	251	942	8 -1, 8 -2 중 하나만 선택가능 8 -1 : 물품옵션 7 -1 선택 시 선택가능 8 -2 : 물품옵션 7 -2 선택 시 선택가능
				8 -2 침실1 대형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1,520	76	304	1,140	
		파우더룸	미설치	9 침실1 파우더룸 화장대	997	50	199	748	7 -1 선택 시 선택가능
		불박이장 (침실1)	미설치	10 -1 침실1 불박이장(슬라이딩장)	3,079	154	616	2,309	10 -1, 10 -2 중 하나만 선택가능
				10 -2 침실1 불박이장(슬라이딩장+화장대)	3,368	168	674	2,526	
		불박이장 (침실2)	미설치	11 침실2 불박이장	1,443	72	289	1,082	
		불박이장 (통합형)	미설치	12 침실2+알파룸 통합형 불박이장	2,405	120	481	1,804	공간옵션 11 -1 선택 시 선택가능
		불박이장 (특화형)	미설치	18 알파룸 특화형 불박이장	1,573	79	315	1,179	공간옵션 11 -2 선택 시 선택가능
		욕실 다기능팬	일반 배기팬	14 다기능욕실팬(공용욕실)	470	24	94	352	부부욕실 선택불가

		시스템 에어컨	냉매배관만 제공 (거실+침실1)	15-1 거실,침실1 15-2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통합형 15-3 전실(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4,000	200	800	3,000	15-1,15-2,15-3 중 하나만 선택가능 15-2 : 공간옵션 1-1 선택 시 선택가능 15-3 : 공간옵션 1-2 선택 시 선택가능
		간접조명	미설치	16 우물천장 테두리 간접조명	445	22	89	334	
		감성조명	거실등	17 거실등+침실등(알파룸 포함)	530	27	106	397	기본형(거실등) : 5단계 디밍제어 물품옵션(거실등+침실등(알파룸 포함)) : 5단계 디밍+색온도제어
		바닥재	강화합판마루	18 기능성榻카펫(THK.6)	무상제공				
55B	기본형 및 공간 확장형	시스템선반 (현관)	미설치	1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577	29	115	433	
		현관중문	미설치	2 현관중문(3연동슬라이딩도어)	1,340	67	268	1,005	
		주방상판+ 벽+ 아일랜드식탁	MMA(상판)+ 벽(타일), 아일랜드식탁	3-1 아일랜드식탁 추가(MMA상판) 3-2 엔지니어드스톤(상판+벽) 3-3 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아일랜드식탁 추가)	1,419	71	284	1,064	3-1,3-2,3-3 중 하나만 선택가능 아일랜드식탁 : 고정식(이동불가)
			미설치		1,090	55	218	817	
		쿡탑	3구형 가스쿡탑	4-1 쿡탑(하이라이트 1구+인덕션 2구) 4-2 쿡탑(인덕션 3구)	530	27	106	397	4-1,4-2 중 하나만 선택가능
					550	28	110	412	
		냉장고장	냉장고장+김 치냉장고장	5-1 냉장고장+키큰장(수납중심형) 5-2 냉장고장+키큰장(수납+오픈형)	311	16	62	233	5-1,5-2 중 하나만 선택가능
					427	21	85	321	
		드레스룸	미설치 (드레스룸 공간만 제공)	6 침실1 대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설치)	764	38	153	573	
		시스템선반 (드레스룸)	미설치 (드레스룸 공간만 제공)	7 침실1 대형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1,026	51	205	770	물품옵션 6 선택 시 선택가능
		불박이장 (침실1)	미설치	8-1 침실1 불박이장(슬라이딩장) 8-2 침실1 불박이장(슬라이딩장+화장대)	3,055	153	611	2,291	8-1,8-2 중 하나만 선택가능
					3,346	167	669	2,510	
		불박이장 (침실2)	미설치	9 침실2 불박이장	1,443	72	289	1,082	
		불박이장 (통합형)	미설치	10 침실2+알파룸 통합형 불박이장	2,405	120	481	1,804	공간옵션 1-1 선택 시 선택가능
		불박이장 (특화형)	미설치	11 알파룸 특화형 불박이장	1,573	79	315	1,179	공간옵션 1-2 선택 시 선택가능
		욕실 다기능팬	일반 배기팬	12 다기능욕실팬(공용욕실)	470	24	94	352	부부욕실 선택불가
		시스템 에어컨	냉매배관만 제공 (거실+침실1)	13-1 거실,침실1 13-2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통합형 13-3 전실(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4,000	200	800	3,000	13-1,13-2,13-3 중 하나만 선택가능 13-2 : 공간옵션 1-1 선택 시 선택가능 13-3 : 공간옵션 1-2 선택 시 선택가능
		간접조명	미설치	14 우물천장 테두리 간접조명	510	26	102	382	
		감성조명	거실등	15 거실등+침실등(알파룸 포함)	530	27	106	397	기본형(거실등) : 5단계 디밍제어 물품옵션(거실등+침실등(알파룸 포함)) : 5단계 디밍+색온도제어
		바닥재	강화합판마루	16 기능성榻카펫(THK.6)	무상제공				
55C	기본형 및 공간 확장형	현관 구조	현관창고 공간만 제공	1 현관창고+복도팬트리	983	49	197	737	가구(시스템선반 등) 미포함
		시스템선반 (현관)	미설치	2-1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2-2 팬트리 시스템선반 - 물품옵션 1 선택 시	597	30	119	448	2-1, 2-2 중 하나만 선택가능 2-2 : 물품옵션 1 선택 시 선택가능
					970	49	194	727	
		현관중문	미설치	3 현관중문(3연동슬라이딩도어)	1,340	67	268	1,005	
		주방상판+ 벽+ 아일랜드식탁	MMA(상판)+ 벽(타일), 아일랜드식탁	4-1 아일랜드식탁 추가(MMA상판) 4-2 엔지니어드스톤(상판+벽) 4-3 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아일랜드식탁 추가)	1,510	76	302	1,132	4-1,4-2,4-3,4-4 중 하나만 선택가능 아일랜드식탁 : 고정식(이동불가) 4-4 : 물품옵션 1 선택 시 선택가능
				4-4 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아일랜드식탁 추가) - 물품옵션 1 선택 시	919	46	184	689	
			미설치		2,818	141	564	2,113	
					2,605	130	521	1,954	
		쿡탑	3구형 가스쿡탑	5-1 쿡탑(하이라이트 1구+인덕션 2구) 5-2 쿡탑(인덕션 3구)	530	27	106	397	5-1,5-2 중 하나만 선택가능
					550	28	110	412	
		냉장고장	냉장고장+김 치냉장고장	6-1 냉장고장+키큰장(수납중심형) 6-2 냉장고장+키큰장(수납+오픈형)	311	16	62	233	6-1,6-2 중 하나만 선택가능
					427	21	85	321	
		드레스룸	미설치 (드레스룸 공간만 제공)	7-1 침실1 드레스룸(도어 및 경량벽체 설치) 7-2 침실1 대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설치)	709	35	142	532	7-1,7-2 중 하나만 선택가능
					796	40	159	597	
		시스템선반 (드레스룸)	미설치 (드레스룸 공간만 제공)	8-1 침실1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8-2 침실1 대형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1,256	63	251	942	8-1,8-2 중 하나만 선택가능 8-1 : 물품옵션 7-1 선택 시 선택가능 8-2 : 물품옵션 7-2 선택 시 선택가능
					1,520	76	304	1,140	
		불박이장 (침실1)	미설치	9-1 침실1 불박이장(슬라이딩장) 9-2 침실1 불박이장(슬라이딩장+화장대)	3,079	154	616	2,309	9-1,9-2 중 하나만 선택가능
					3,368	168	674	2,526	
		불박이장 (침실2)	미설치	10 침실2 불박이장	1,443	72	289	1,082	
		불박이장 (통합형)	미설치	11 침실2+알파룸 통합형 불박이장	2,405	120	481	1,804	공간옵션 1-1 선택 시 선택가능
		불박이장 (특화형)	미설치	12 알파룸 특화형 불박이장	1,573	79	315	1,179	공간옵션 1-2 선택 시 선택가능
		욕실 다기능팬	일반 배기팬	13 다기능욕실팬(공용욕실)	470	24	94	352	부부욕실 선택불가
		시스템 에어컨	냉매배관만 제공 (거실+침실1)	14-1 거실,침실1 14-2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통합형 14-3 전실(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4,000	200	800	3,000	14-1,14-2,14-3 중 하나만 선택가능 14-2 : 공간옵션 1-1 선택 시 선택가능 14-3 : 공간옵션 1-2 선택 시 선택가능
		간접조명	미설치	15 우물천장 테두리 간접조명	445	22	89	334	
		감성조명	거실등	16 거실등+침실등(알파룸 포함)	530	27	106	397	기본형(거실등) : 5단계 디밍제어 물품옵션(거실등+침실등(알파룸 포함)) : 5단계 디밍+색온도제어
		바닥재	강화합판마루	17 기능성榻카펫(THK.6)	무상제공				
56T	기본형 및 공간 확장형	시스템선반 (현관)	미설치	1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600	30	120	450	
		현관중문	미설치	2 현관중문(3연동슬라이딩도어)	1,340	67	268	1,005	
		주방상판+ 벽+ 아일랜드식탁	MMA(상판)+ 벽(타일), 아일랜드식탁	3-1 아일랜드식탁 추가(MMA상판) 3-2 엔지니어드스톤(상판+벽) 3-3 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아일랜드식탁 추가)	1,625	81	325	1,219	3-1,3-2,3-3 중 하나만 선택가능 아일랜드식탁 : 고정식(이동불가)
					1,043	52	209	782	
			미설치		2,798	140	560	2,098	

		쿡탑	3구형 가스쿡탑	4-1 쿡탑(하이라이트 1구+인덕션 2구) 4-2 쿡탑(인덕션 3구)	530 550	27 28	106 110	397 412	4-1, 4-2 중 하나만 선택가능
		냉장고장	냉장고장+김 치냉장고장	5-1 냉장고장+키큰장(수납중심형) 5-2 냉장고장+키큰장(수납+오픈형)	311 427	16 21	62 85	233 321	5-1, 5-2 중 하나만 선택가능
		드레스룸	미설치 (드레스룸 공간만 제공)	6 침실1 드레스룸(도어 및 시스템선반 설치)	767	38	153	576	
		불박이장 (침실1)	미설치	7-1 침실1 불박이장(슬라이딩장) 7-2 침실1 불박이장(슬라이딩장+화장대)	2,593 2,815	130 141	519 563	1,944 2,111	7-1, 7-2 중 하나만 선택가능
		불박이장 (침실)	미설치	8 침실2 불박이장	1,443	72	289	1,082	
		불박이장 (통합형)	미설치	9 침실2+알파룸 통합형 불박이장	2,227	111	445	1,671	공간오픈 1-1 선택 시 선택가능
		불박이장 (특화형)	미설치	10 알파룸 특화형 불박이장	1,394	70	279	1,045	공간오픈 1-2 선택 시 선택가능
		욕실 다기능팬	일반 배기팬	11 다기능욕실판(공용욕실)	470	24	94	352	부부욕실 선택불가
		시스템 에어컨	냉매배관만 제공 (거실+침실1)	12-1 거실, 침실1 12-2 거실, 침실1, 침실2+알파룸 통합형 12-3 전실(거실, 침실1, 침실2, 알파룸)	4,000 6,300 7,500	200 315 375	800 1,260 1,500	3,000 4,725 5,625	12-1, 12-2, 12-3 중 하나만 선택가능 12-2 : 공간오픈 1-1 선택 시 선택가능 12-3 : 공간오픈 1-2 선택 시 선택가능
		간접조명	미설치	13 우물천장 테두리 간접조명	469	23	94	352	
		감성조명	거실등	14 거실등+침실등(알파룸 포함)	515	26	103	386	기본형(거실등) : 5단계 디밍제어 물품오픈(거실등+침실등(알파룸 포함)) : 5단계 디밍+색온도제어
		바닥재	강화합판마루	15 기능성롱카펫(THK.6)	무상제공				

(본청약 당첨자)

주택 타입	공간 선택유형	구분	기본형	선택품목	선택 시 납부조건 (단위:천원)					비고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중도금 1차 (‘28.03.15.)	중도금 2차 (‘29.07.18.)	잔금 (입주 시)	
55A	기본형 및 공간 확장형	현관 구조	현관창고 공간만 제공	1 현관장+복도팬트리	983	98	98	98	689	가구(시스템선반 등) 미포함
		시스템선반 (현관)	미설치	2-1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597	60	60	60	417	2-1, 2-2 중 하나만 선택가능 2-2 : 물품오픈 1 선택 시 선택가능
				2-2 팬트리 시스템선반 - 물품오픈 1 선택 시	970	97	97	97	679	
		현관중문	미설치	3 현관중문(3연동슬라이딩도어)	1,340	134	134	134	938	
		주방상판+ 벽+ 아일랜드식탁	MMA(상판)+ 벽(타일), 아일랜드식탁 미설치	4-1 아일랜드식탁 추가(MMA상판)	1,510	151	151	151	1,057	4-1, 4-2, 4-3, 4-4 중 하나만 선택가능 아일랜드식탁 : 고정식(이동불가) 4-4 : 물품오픈 1 선택 시 선택가능
				4-2 엔지니어드스톤(상판+벽)	919	92	92	92	643	
				4-3 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아일랜드식탁 추가)	2,818	282	282	282	1,972	
				4-4 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아일랜드식탁 추가) - 물품오픈 1 선택 시	2,605	261	261	261	1,822	
		쿡탑	3구형 가스쿡탑	5-1 쿡탑(하이라이트 1구+인덕션 2구)	530	53	53	53	371	5-1, 5-2 중 하나만 선택가능
				5-2 쿡탑(인덕션 3구)	550	55	55	55	385	
		냉장고장	냉장고장+김 치냉장고장	6-1 냉장고장+키큰장(수납중심형)	311	31	31	31	218	6-1, 6-2 중 하나만 선택가능
				6-2 냉장고장+키큰장(수납+오픈형)	427	43	43	43	298	
		드레스룸	미설치 (드레스룸 공간만 제공)	7-1 침실1 드레스룸(도어 및 경량벽체 설치)	709	71	71	71	496	7-1, 7-2 중 하나만 선택가능
				7-2 침실1 대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설치)	796	80	80	80	556	
		시스템선반 (드레스룸)	미설치 (드레스룸 공간만 제공)	8-1 침실1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1,256	126	126	126	878	8-1, 8-2 중 하나만 선택가능 8-1 : 물품오픈 7-1 선택 시 선택가능 8-2 : 물품오픈 7-2 선택 시 선택가능
				8-2 침실1 대형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1,520	152	152	152	1,064	
		파우더룸	미설치	9 침실1 파우더룸 화장대	997	100	100	100	697	7-1 선택 시 선택가능
		불박이장 (침실1)	미설치	10-1 침실1 불박이장(슬라이딩장)	3,079	308	308	308	2,155	10-1, 10-2 중 하나만 선택가능
				10-2 침실1 불박이장(슬라이딩장+화장대)	3,368	337	337	337	2,357	
		불박이장 (침실2)	미설치	11 침실2 불박이장	1,443	144	144	144	1,011	
		불박이장 (통합형)	미설치	12 침실2+알파룸 통합형 불박이장	2,405	241	241	241	1,682	공간오픈 1-1 선택 시 선택가능
		불박이장 (특화형)	미설치	13 알파룸 특화형 불박이장	1,573	157	157	157	1,102	공간오픈 1-2 선택 시 선택가능
		욕실 다기능팬	일반 배기팬	14 다기능욕실판(공용욕실)	470	47	47	47	329	부부욕실 선택불가
		시스템 에어컨	냉매배관만 제공 (거실+침실1)	15-1 거실, 침실1	4,000	400	400	400	2,800	15-1, 15-2, 15-3 중 하나만 선택가능 15-2 : 공간오픈 1-1 선택 시 선택가능 15-3 : 공간오픈 1-2 선택 시 선택가능
				15-2 거실, 침실1, 침실2+알파룸 통합형	6,300	630	630	630	4,410	
				15-3 전실(거실, 침실1, 침실2, 알파룸)	7,500	750	750	750	5,250	
		간접조명	미설치	16 우물천장 테두리 간접조명	445	45	45	45	310	
		감성조명	거실등	17 거실등+침실등(알파룸 포함)	530	53	53	53	371	기본형(거실등) : 5단계 디밍제어 물품오픈(거실등+침실등(알파룸 포함)) : 5단계 디밍+색온도제어
		바닥재	강화합판마루	18 기능성롱카펫(THK.6)	무상제공					
55B	기본형 및 공간 확장형	시스템선반 (현관)	미설치	1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577	58	58	58	403	
		현관중문	미설치	2 현관중문(3연동슬라이딩도어)	1,340	134	134	134	938	
		주방상판+ 벽+ 아일랜드식탁	MMA(상판)+ 벽(타일), 아일랜드식탁 미설치	3-1 아일랜드식탁 추가(MMA상판)	1,419	142	142	142	993	3-1, 3-2, 3-3 중 하나만 선택가능 아일랜드식탁 : 고정식(이동불가)
				3-2 엔지니어드스톤(상판+벽)	1,090	109	109	109	763	
				3-3 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아일랜드식탁 추가)	2,608	261	261	261	1,825	
		쿡탑	3구형 가스쿡탑	4-1 쿡탑(하이라이트 1구+인덕션 2구)	530	53	53	53	371	4-1, 4-2 중 하나만 선택가능
				4-2 쿡탑(인덕션 3구)	550	55	55	55	385	

55C	기본형 및 공간 확장형	냉장고장	냉장고장+김 치냉장고장	5-1 냉장고장+키큰장(수납중심형) 5-2 냉장고장+키큰장(수납+오픈형)	311 427	31 43	31 43	31 43	218 298	5-1, 5-2 중 하나만 선택가능
		드레스룸	미설치 (드레스룸 공간만 제공)	6 침실1 대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설치)	764	76	76	76	536	
		시스템선반 (드레스룸)	미설치 (드레스룸 공간만 제공)	7 침실1 대형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1,026	103	103	103	717	물품옵션 6 선택 시 선택가능
		불박이장 (침실1)	미설치	8-1 침실1 불박이장(슬라이딩장) 8-2 침실1 불박이장(슬라이딩장+화장대)	3,055 3,346	306 335	306 335	306 335	2,137 2,341	8-1, 8-2 중 하나만 선택가능
		불박이장 (침실2)	미설치	9 침실2 불박이장	1,443	144	144	144	1,011	
		불박이장 (통합형)	미설치	10 침실2+알파룸 통합형 불박이장	2,405	241	241	241	1,682	공간옵션 1-1 선택 시 선택가능
		불박이장 (특화형)	미설치	11 알파룸 특화형 불박이장	1,573	157	157	157	1,102	공간옵션 1-2 선택 시 선택가능
		욕실 다기능팬	일반 배기팬	12 다기능욕실팬(공용욕실)	470	47	47	47	329	부부욕실 선택불가
		시스템 에어컨	냉매배관만 제공 (거실+침실1)	13-1 거실, 침실1	4,000	400	400	400	2,800	13-1, 13-2, 13-3 중 하나만 선택가능
				13-2 거실, 침실1, 침실2+알파룸 통합형	6,300	630	630	630	4,410	13-2 : 공간옵션 1-1 선택 시 선택가능
				13-3 전실(거실, 침실1, 침실2, 알파룸)	7,500	750	750	750	5,250	13-3 : 공간옵션 1-2 선택 시 선택가능
		간접조명	미설치	14 우물천장 테두리 간접조명	510	51	51	51	357	
		감성조명	거실등	15 거실등+침실등(알파룸 포함)	530	53	53	53	371	기본형(거실등) : 5단계 디밍제어 물품옵션(거실등+침실등(알파룸 포함)) : 5단계 디밍+색온도제어
		바닥재	강화합판마루	16 기능성룽카펫(THK.6)	무상제공					
55C	기본형 및 공간 확장형	현관 구조	현관창고 공간만 제공	1 현관장+복도팬트리	983	98	98	98	689	가구(시스템선반 등) 미포함
		시스템선반 (현관)	미설치	2-1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597	60	60	60	417	2-1, 2-2 중 하나만 선택가능
				2-2 팬트리 시스템선반 - 물품옵션 1 선택 시	970	97	97	97	679	2-2 : 물품옵션 1 선택 시 선택가능
		현관중문	미설치	3 현관중문(3연동슬라이딩도어)	1,340	134	134	134	938	
		주방상판+ 벽+ 아일랜드식탁	MMA(상판)+ 벽(타일), 아일랜드식탁 미설치	4-1 아일랜드식탁 추가(MMA상판)	1,510	151	151	151	1,057	4-1, 4-2, 4-3, 4-4 중 하나만 선택가능 아일랜드식탁 : 고정식(이동불가) 4-4 : 물품옵션 1 선택 시 선택가능
				4-2 엔지니어드스톤(상판+벽)	919	92	92	92	643	
				4-3 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아일랜드식탁 추가)	2,818	282	282	282	1,972	
				4-4 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아일랜드식탁 추가) - 물품옵션 1 선택 시	2,605	261	261	261	1,822	
		쿡탑	3구형 가스쿡탑	5-1 쿡탑(하이라이트 1구+인덕션 2구)	530	53	53	53	371	5-1, 5-2 중 하나만 선택가능
				5-2 쿡탑(인덕션 3구)	550	55	55	55	385	
		냉장고장	냉장고장+김 치냉장고장	6-1 냉장고장+키큰장(수납중심형) 6-2 냉장고장+키큰장(수납+오픈형)	311 427	31 43	31 43	31 43	218 298	6-1, 6-2 중 하나만 선택가능
		드레스룸	미설치 (드레스룸 공간만 제공)	7-1 침실1 드레스룸(도어 및 경량벽체 설치)	709	71	71	71	496	7-1, 7-2 중 하나만 선택가능
				7-2 침실1 대형 드레스룸(슬라이딩도어 설치)	796	80	80	80	556	
		시스템선반 (드레스룸)	미설치 (드레스룸 공간만 제공)	8-1 침실1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1,256	126	126	126	878	8-1, 8-2 중 하나만 선택가능 8-1 : 물품옵션 7-1 선택 시 선택가능
				8-2 침실1 대형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1,520	152	152	152	1,064	8-2 : 물품옵션 7-2 선택 시 선택가능
		불박이장 (침실1)	미설치	9-1 침실1 불박이장(슬라이딩장) 9-2 침실1 불박이장(슬라이딩장+화장대)	3,079 3,368	308 337	308 337	308 337	2,155 2,357	9-1, 9-2 중 하나만 선택가능
		불박이장 (침실2)	미설치	10 침실2 불박이장	1,443	144	144	144	1,011	
		불박이장 (통합형)	미설치	11 침실2+알파룸 통합형 불박이장	2,405	241	241	241	1,682	공간옵션 1-1 선택 시 선택가능
		불박이장 (특화형)	미설치	12 알파룸 특화형 불박이장	1,573	157	157	157	1,102	공간옵션 1-2 선택 시 선택가능
		욕실 다기능팬	일반 배기팬	13 다기능욕실팬(공용욕실)	470	47	47	47	329	부부욕실 선택불가
		시스템 에어컨	냉매배관만 제공 (거실+침실1)	14-1 거실, 침실1	4,000	400	400	400	2,800	14-1, 14-2, 14-3 중 하나만 선택가능
				14-2 거실, 침실1, 침실2+알파룸 통합형	6,300	630	630	630	4,410	14-2 : 공간옵션 1-1 선택 시 선택가능
				14-3 전실(거실, 침실1, 침실2, 알파룸)	7,500	750	750	750	5,250	14-3 : 공간옵션 1-2 선택 시 선택가능
		간접조명	미설치	15 우물천장 테두리 간접조명	445	45	45	45	310	
		감성조명	거실등	16 거실등+침실등(알파룸 포함)	530	53	53	53	371	기본형(거실등) : 5단계 디밍제어 물품옵션(거실등+침실등(알파룸 포함)) : 5단계 디밍+색온도제어
		바닥재	강화합판마루	17 기능성룽카펫(THK.6)	무상제공					
56T	기본형 및 공간 확장형	시스템선반 (현관)	미설치	1 현관창고 시스템선반	600	60	60	60	420	
		현관중문	미설치	2 현관중문(3연동슬라이딩도어)	1,340	134	134	134	938	
		주방상판+ 벽+ 아일랜드식탁	MMA(상판)+ 벽(타일), 아일랜드식탁 미설치	3-1 아일랜드식탁 추가(MMA상판)	1,625	163	163	163	1,136	3-1, 3-2, 3-3 중 하나만 선택가능 아일랜드식탁 : 고정식(이동불가)
				3-2 엔지니어드스톤(상판+벽)	1,043	104	104	104	731	
				3-3 엔지니어드스톤 (상판+벽+아일랜드식탁 추가)	2,798	280	280	280	1,958	
		쿡탑	3구형 가스쿡탑	4-1 쿡탑(하이라이트 1구+인덕션 2구)	530	53	53	53	371	4-1, 4-2 중 하나만 선택가능
				4-2 쿡탑(인덕션 3구)	550	55	55	55	385	
		냉장고장	냉장고장+김 치냉장고장	5-1 냉장고장+키큰장(수납중심형) 5-2 냉장고장+키큰장(수납+오픈형)	311 427	31 43	31 43	31 43	218 298	5-1, 5-2 중 하나만 선택가능
		드레스룸	미설치 (드레스룸 공간만 제공)	6 침실1 드레스룸(도어 및 시스템선반 설치)	767	77	77	77	536	

		불박이장 (침실1)	미설치	7-1 침실1 불박이장(슬라이딩장)	2,593	259	259	259	1,816	7-1, 7-2 중 하나만 선택가능
				7-2 침실1 불박이장(슬라이딩장+화장대)	2,815	282	282	282	1,969	
		불박이장 (침실)	미설치	8 침실2 불박이장	1,443	144	144	144	1,011	
		불박이장 (통합형)	미설치	9 침실2+알파룸 통합형 불박이장	2,227	223	223	223	1,558	공간옵션 1-1 선택 시 선택가능
		불박이장 (특화형)	미설치	10 알파룸 특화형 불박이장	1,394	139	139	139	977	공간옵션 1-2 선택 시 선택가능
		욕실 다기능팬	일반 배기팬	11 다기능욕실팬(공용욕실)	470	47	47	47	329	부부욕실 선택불가
		시스템 에어컨	냉매배관만 제공 (거실+침실1)	12-1 거실,침실1	4,000	400	400	400	2,800	12-1, 12-2, 12-3 중 하나만 선택가능 12-2 : 공간옵션 1-1 선택 시 선택가능 12-3 : 공간옵션 1-2 선택 시 선택가능
				12-2 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통합형	6,300	630	630	630	4,410	
				12-3 전실(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7,500	750	750	750	5,250	
		간접조명	미설치	13 우물천장 테두리 간접조명	469	47	47	47	328	
		감성조명	거실등	14 거실등+침실등(알파룸 포함)	515	52	52	52	359	기본형(거실등) : 5단계 디밍제어 다기능형(거실등+침실등(알파룸 포함)) : 5단계 디밍+색온도제어
		바닥재	강화합판마루	15 기능성러그펫(THK.6)	무상제공					

4. 입주금 납부 안내

- 최대 주택가격의 70%(4억원 한도)까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주택은 주택분양가격이 총자산기준가액(3.62억원)을 초과하므로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해당 전용대출상품에 의무적으로 주택가격의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대출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의 ‘개인상품’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합니다.(은행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각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주택도시시기금 용자금은 제외)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5%(공고일 현재 기준, 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시기금 용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시 선납할인 기준일 변경으로 인해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입주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공고일 현재 연 7.5%,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을, 연체이율 등 각종 이율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시중금리변동 및 우리공사의 방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선납할인율의 경우 선납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연체이율의 경우 이율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에는 변경 전 이율을 적용하고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율변경을 사유로 기납부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 등의 산정은 평년의 경우 1년을 365일로 보며,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립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에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춤)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

1. 신혼희망타운 우선 공급물량 배정기준

- 성남북정2 A1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성남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이 발생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됨)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거나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분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선정 단계별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이 경우 우선공급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는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 해당 우선공급 기간 중에 해당 지역에 계속해서 거주함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지 못함이 밝혀졌을 때는 부적격 처리됩니다.(단순 해외여행, 친지방문 또는 출장 등 단기간 체류는 무방합니다.)

- (1) '24.08.10.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2) '24.08.10.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지역우선 공급기준

<표2> 지역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 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08.10.)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	100%	· 공고일 현재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24.08.10. 이전부터 계속하여 성남시 거주 ('24.08.10. 전입한 경우 포함)
	② 기타지역	0%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주택건설지역 2년 미만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성남시를 제외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의 경우에도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됨)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및 제53조에 따라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당첨자발표 (2026.09.17.) 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적용대상 :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원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 처리 됨
-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여부 판단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 ※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 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개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분양권 등 포함) 산정 기준

- 무주택 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 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신혼희망타운의 당첨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총자산보유 판정 기준

■ 적용대상 : 본청약(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청자 (*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재심사하지 않음)

■ 검토대상 : 신혼부부나 한부모가족 신청자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하며,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시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될 세대를 말함

※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보유자산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총자산보유기준 산정 대상에서 제외

■ 총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0.) 현재 “<표3> 총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및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 시점은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안내서에 따라 조사기준일(통상 당첨자 서류 접수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조사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 전 말일)로 합니다. 다만, 우리 공사는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첨자의 총자산을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총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총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총자산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조회·산정하며, 조회 과정에서 자산 항목의 성격에 따라 데이터가 중복 집계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복 집계된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차감 처리가 불가하므로 본인의 자산 현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자산 가액 신청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총자산은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 가액의 총합과 부채의 차액으로 검증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은 가입자가 직접 운용·인출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금융재산에 포함되며,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퇴직 전 개인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여 금융재산에서 제외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3> 총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표3> 총자산보유기준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상기 3. 총자산보유판정기준 자산 및 부채의 산정시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부동산 (건물+토지)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62,000천원 이하	건물	건축물 종류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건 물 시설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소유자와 농업인 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② 금융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조사기준일로부터 과거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기준일 당시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조사기준일 당시 최종 시세가액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조사기준일 당시 액면가액 예수금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연금저축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 조사기준일 당시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개인형퇴직연금(IRP) : 조사기준일 당시 잔액	
③ 기타자산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지방세법」 제6조제11 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④ 자동차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⑤ 부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시 제외되는 항목 예시 : 한도대출(일명 ‘마이너스통장 대출’), 카드론 등 - 마이너스통장 또는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등과 같은 유동성 한도대출금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며, 카드론(장기카드대출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로부터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카드론 대출액을 소명할 경우 부채로 인정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관련공사가 증명한 부채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구분	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인 경우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3.3.27.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	
① 부동산(건물+토지)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397,000천원 이하	①+②+③+④ 합계액에서 ⑤를 차감한 금액이 431,000천원 이하	<표3> 총자산보유기준 참고
② 금융자산			
③ 기타자산			
④ 자동차			
⑤ 부채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방 문 신 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6년식 자동차를 2025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 판정 기준

■ 적용대상 : 본청약(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 신청자 (*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재심사하지 않음)

■ 소득기준 적용

- 우리 공사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0.) 현재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단위 : 원]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일반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5,273,634	6,161,541	6,528,890	6,934,384	7,339,879	7,745,37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추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579,278원) 추가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예비)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단위 : 원]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8,851,85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90%	6,780,387	7,921,982	8,394,287	8,915,637	9,436,987	9,958,33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11,064,81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12,171,30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9,040,516	10,562,642	11,192,382	11,887,516	12,582,649	13,277,78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50%	11,300,645	13,203,303	13,990,478	14,859,395	15,728,312	16,597,22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	12,054,021	14,083,523	14,923,176	15,850,021	16,776,866	17,703,71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10%	15,820,902	18,484,624	19,586,669	20,803,152	22,019,636	23,236,12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20%	16,574,279	19,364,844	20,519,367	21,793,779	23,068,190	24,342,602

- 가구원수를 판단하는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적용 기준>

구 분	가구원수 적용 기준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페이지의 ‘ 무주택세대구성원 ’에 해당하는 자 전원 ※ 임신 중인 태아도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은 인정하지 않음.
예비신혼부부	2페이지의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에 해당하는 자 전원 ※ 임신 중인 태아도 태아의 수만큼 가구원수로 산정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위 ‘ 가구원수 적용 기준 ’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의 합산 소득 ※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보험료조회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

으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국민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 자료→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 자료를 적용함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표7>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Ⅲ 신혼희망타운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0. 공통 유의사항

-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모기지 의무가입 지구] 금회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 가입 사실을 입주 시까지 증명해야 하며,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부적격처리 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다른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 **신혼희망타운 신청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함)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수도권)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요]** 동·호수는 본청약을 신청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포함 본청약 당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주택형 내 주택타입별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로 전산 추첨하며, 미계약 동·호수 발생 시에도 변경 불가합니다.

1. 사전청약 당첨자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0.) 현재 아래 조건(①~③)을 모두 충족한 사전청약 당첨자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0.(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상속의 경우는 제외)
 -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사전청약 신청 당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 ②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15.)부터 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6.08.10.)까지 주택을 소유한(상속의 경우는 제외) 사실이 없으며**,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사실이 없는 분**
 - ③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였거나**,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으신 경우 **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충족한 분**
 - ※ 해당지역 전입일~본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 아래 국외 체류여부를 확인하여 거주기간 요건 충족여부 판단
 - (1)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 (2) 해당지역 전입일 이후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약 불가
 - (3)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거주기간은 따로 고려하지 않음
 - ※ 사전청약 당첨 당시 지역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1.10.15.) 당시의 지역우선공급 기준(성남시 2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유지여부, 재당첨제한 적용여부, 특별공급 기당첨여부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0.) 현재의 무주택세대구성원(사전청약 공고 이후 추가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원 포함)을 기준으로 검증하며, 사전청약 시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한 경우에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청약 신청 당시 작성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본청약 모집공고일 기준(2026.08.10.) 위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08.31.(월) 10:00 ~ 2026.09.01.(화) 17:00**
- 신청방법 :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청약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신청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접속 후 신청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신청 → 공공분양(신혼희망)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및 세부 주택타입 지망 선택 및 접수 → (접수 후) 주택타입 발표 확인 → 본청약 신청 취소 시 포기 신청 필요(청약 일정 확인)**

-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신청서 작성 시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형의 모든 주택형(타입)에 대하여 선호순위를 선택(중복선택 불가) 해야 합니다. 주택형(타입)은 각 선호 순위 순(1순위→2순위→...)으로 우리공사 전산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배정됩니다.(본청약 시 선택가능한 주택형 내 타입이 1개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청 필요)

사업지구	블록	사전청약시 당첨된 주택형	본청약시 선택 가능한 주택형(타입)
성남복정2	A1	55	055.9700A, 055.9700B, 055.9800C
		56	056.9400T

- 사전청약 당첨자가 배정된 주택형(타입)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취소신청 기간 내 LH 청약플러스에서 포기신청(인증서 필요)**을 하여야 하며, 본청약 신청 포기 후에는 **취소가 절대 불가합니다.**(단, 현장접수 후 본청약 신청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 포기 필요) 본청약 신청 포기 시 청약통장은 사용처리되지 않으며, **해당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금회 공급되는 주택(본청약 신규신청자) 및 타 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타입) 배정 결과 확인 : 2026.09.02.(수) 14:00 (LH 청약플러스 → 청약 → 분양주택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 배정 결과 조회)
- 본청약 신청 취소 기간 : 2026.09.03.(목) 10:00 ~ 2026.09.04.(금) 17:00 (LH 청약플러스 → 청약 → 분양주택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형 배정 결과 조회 → 포기선택)
 -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위 신청일 및 방법에 따라 신청하지 않으면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본청약(신규신청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물량은 본청약(신규신청자)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또한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위 신청일에 신청을 한 후, 신청 취소기간에 취소 신청하지 않으면 취소기간 이후 취소가 불가능하며, 당첨일 이후 청약통장 사용 등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유의사항

- 중복신청 금지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08.31.(월)~09.01.(화))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 주택의 본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 ※ **중복 신청시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사전청약 당첨자” 신청일[2026.08.31.(월)~09.01.(화)]에 미신청(포기)한 경우와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당첨된 주택타입 확인 후 본청약 신청을 취소한 경우, 본청약(신규신청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첨자 선정은 본청약 신청자와 동일하게 자격심사 및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 및 그 세대원이 각각 신청하거나 1인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등]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합니다.
- 입주자저축 효력상실 : 사전청약 당첨자(입주예약자)가 해당 본청약 당첨 시 **당첨자발표일[2026.09.17.(목)] 이후 사전청약 시 사용한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됩니다.**
 - ※ 사전청약 시 사용한 입주자저축으로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신청이 불가하며, 신청 시에는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됩니다.

2. 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

- ① 혼인 중인 신혼부부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2019.08.10.~2026.08.10.에 속한 자)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으로, 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 동일 배우자와 재혼하였을 경우 혼인기간은 전체 혼인기간을 합산
-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15페이지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
-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14페이지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14페이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15페이지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3. 예비신혼부부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예비신혼부부
- ① 혼인을 준비 중인 예비신혼부부로서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청약 시 입력한 ‘예비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3 제3호다목에 따라 계약체결한 경우라도 계약 취소함.
-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15페이지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130%(단,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인 분
-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14페이지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14페이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15페이지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총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세대원을 입력하시기 바라며, 청약 후에는 신청자가 입력한 세대원 내역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한부모가족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한부모가족
- ① 6세 이하(만 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의 부 또는 모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며, 추후라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 ②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 공고일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순위확인서)를 통해 확인
-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15페이지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 ④ 해당 세대의 총자산 합계액이 14페이지 “<표3> 총자산보유기준“ 이하인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14페이지 <표4>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15페이지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5. 입주자 선정방법

- 1단계 우선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만 3세 미만을 말함, 태아포함, 이하 같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30%(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미달 시 기타지역(성남시 2년 미만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성남시 외 경기도 거주자)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8> 우선공급 배점표”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8> 우선공급 배점표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가구소득	① 70% 이하	3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2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초과 110% 이하
	③ 100% 초과	1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2)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 공고일 현재 경기도 에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
	③ 1년 미만	1	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④ 미거주	0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도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전환일부터 산정

※ (1) 가구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되었음이 판명될 경우 입주예정자는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점수 선택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가구소득은 15페이지 “<표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23.3.28 이후 출생한 자녀)는 15페이지 <표6>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참조

<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단위 : 원)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우선·일반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10,547,268	12,323,083	13,057,779	13,868,768	14,679,757	15,490,747
	(우선) 배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5,273,634	6,161,541	6,528,890	6,934,384	7,339,87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6,027,010	7,041,762	7,461,588	7,925,010	8,388,433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7,533,763	8,802,202	9,326,985	9,906,263	10,485,54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1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287,139	9,682,422	10,259,684	10,896,889	11,534,095
추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9,793,892	11,442,863	12,125,081	12,878,142	13,631,203	14,384,265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67,526	17,604,404	18,653,970	19,812,526	20,971,082	22,129,638

■ 2단계 일반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가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을 말함, 이하 같음)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인자와 **1단계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60%(소수점이하는 올림)**를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미달 시 기타지역(성남시 2년 미만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성남시 외 경기도 거주자)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표9> 일반공급 배점표”의 배점항목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표9> 일반공급 배점표

배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미성년자녀수	① 3명 이상	3	• 태아(입양) 포함
	② 2명	2	
	③ 1명	1	
	④ 0명	0	
(2) 무주택기간	① 3년 이상	3	• <표1>의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신청자가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상 최초 혼인신고일)부터 산정. ※ 공고일 현재 만 30세 미만이면서 혼인한 적이 없는 분은 가점대상이 아니므로 해당없음(0점) 선택
	② 1년 이상 3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해당없음	0	
(3)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3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표등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으로 청약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을 경우 0점
	② 1년 이상 2년 미만	2	
	③ 1년 미만	1	
	④ 미거주	0	
(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3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 단,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부터 산정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2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1	

※ (1) 미성년자녀수 입력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수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수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직계비속)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인정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태아)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입주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무주택기간

- <표1>의 신청자격별 검증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분이 무주택이 된 날부터 산정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하되,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주택소유여부는 II.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소득·자산)의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참조)
- 만 30세 미만의 미혼인 한부모가족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2)무주택기간 가점’은 0점으로 합니다.

■ 3단계 추첨공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한부모가족)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와 2단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 → 기타지역(성남시 2년 미만 거주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성남시 외 경기도 거주자) 순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IV 신청 시 확인사항(재당첨제한, 전매제한, 주택우선매입, 거주 의무 등)

1. 청약 신청 전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전 확인가능한 청약제한사항	청약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청약제한사항 확인→ 인증서 인증→ 조회기준일 입력→ 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재당첨제한, 특별공급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비)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사실도 주택공급신청자의 청약신청 시 영향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6.09.17.)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3. 거주 의무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2에 따라 입주자에게 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거주 의무자는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해당 거주 의무 개시일부터 3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 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4. 해당점 제한 및 당첨자 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세대원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되,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점제한 규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제6호)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제3호)	10년간

5.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 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타입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신청자격	청약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 신청일자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을 하고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주택 우선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6.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주택타입별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올림)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금회 공급(공공분양)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공사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취소·해제 등으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차후 재공급하게 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LH 서울지역본부로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우리 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타입에 한해 우리 공사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타입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거주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미달물량이 발생할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V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1.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	2026.08.31.(월) 10:00 ~ 2026.09.01.(화) 17:00	인터넷 신청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및 모바일앱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2026.09.07.(월) 10:00 ~ 2026.09.08.(화) 17:00		

- ※ 신청기간 중에는 야간(17:00~10:00)에도 청약 가능함
- ※ 본 단지의 경우 KB부동산 웹/앱을 통해서도 청약신청 및 신청내역 결과조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접속경로 : KB부동산 웹/앱 접속 → 메뉴 → 공공주택 → LH청약전용관)

2. 신청 시 유의사항

- 팸플릿 등으로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타입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청약 신청자는 각 주택타입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타입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주택형(타입) 선택 기간까지 제출 완료)
- 청약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자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당첨사실이 제출서류 등과 달라 부적격이 발생할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VI. 신청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결과는 2026.09.09. 오후 1시 이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 게시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VI

신청방법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1. PC인터넷·모바일 신청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를 소지하고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플러스”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인증서(공동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 인증서는 공동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하나의 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당첨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 신청 → 공공분양(신혼희망) 선택 → “사전청약 당첨자”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및 주택형(타입)별 선호순위 선택 및 접수 → (접수 후) 주택형(타입) 배정 결과 확인 → 본청약 신청 취소 시 포기 신청 필요
- 본청약자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서, 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중 1개) 로그인 → 청약 → 분양주택 → 청약 신청 → 공공분양(신혼희망) 선택 → 주택형(타입) 선택 → 신청유형(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중)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신청시간 : (사전청약 당첨자) 2026.08.31.(월) 10:00 ~ 2026.09.01.(화) 17:00, (본청약 신청자) 2026.09.07.(월) 10:00 ~ 2026.09.08.(화) 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는 당첨된 주택타입 확인 후, 본청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취소신청 기간 (2026.09.03.(목) 10:00 ~ 2026.09.04.(금) 17:00) 내 LH 청약플러스에서 포기신청(인증서 필요) 하시기 바랍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0.)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성남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성남시)", 과거 2년 미만 성남시 거주자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성남시 외 경기도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지역 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마감 후 가점 사항, 무주택 기간 등 본인의 입력사항은 절대 변경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엄격하게 처리하며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가입기간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회차 조회방법(반드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용’으로 발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사용 가능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신혼부부 특별공급용)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공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를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VII

추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선택사양품목 결정,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

1. 추첨(공공분양 동·호, 당첨자 선정)

- 추첨 일시 : 2026년 9월 17일(목) 10:00
- 추첨 내용 ① 공공분양주택 및 행복주택(주거약자용 주택을 포함)의 동·호수
② 공공분양주택의 당첨자, 예비입주자, 당첨자의 동·호수
- 입주자선정 및 동호 추첨 참관을 원하는 분은 주택전시관(연락처 : 031-699-2006)로 사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관인원은 선착순으로 모집함에 따라 접수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발표	서류제출	선택품목 결정 (온라인)	계약체결(당첨자)
	당첨자 및 예비자		
'26.09.17.(목) 14:00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 (apply.lh.or.kr)	'26.09.29.(화) ~ 10.01.(목) (10:00~17:00)	'26.11.30.(월) 10:00 ~ 12.01.(화) 16:00	(전자) '26.12.07.(월) ~ 12.08.(화) 10:00~16:00 (현장) '26.12.09.(수) ~ 12.10.(목) 10:00~16:00
	(현장)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체결 장소 : 주택전시관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941-1 (온라인-선택품목 결정) - PC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센터 → 온라인신청 →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 결정 - 모바일 : “LH 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고객센터 → 온라인신청 → 공간옵션 및 선택품목 결정 (온라인-전자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추후 계약체결 관련 안내 예정 ※ 56T : 전자계약 불가, 현장계약만 가능		

당첨자 확인 방법	
인터넷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 (인증서 로그인하신 경우는 청약 → 고객센터 → 나의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가능)
ARS	고객전화 연결(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당첨여부, 당첨동호, 계약체결기간 안내

- ※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안내 및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니,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소득·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일부는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은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서울지역본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3.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공통 안내사항

- 모든 서류는 **현장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출장소 : 성남북정2 A1블록 주택전시관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941-1)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필수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② 주민등록표등본 (전부 포함)	필수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 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이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④ 주민등록표초본 (전부 포함)	필수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 사전청약공고일(2021.10.15.) 이후 추가된 세대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필수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⑥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선택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⑦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필수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0.) 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 본청약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① 당첨자 본인 신분증		필수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② 주민등록표등본		필수	본인	※ 반드시 주소변동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사유, 세대구성사유,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 번호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필수	본인 및 세대구성원	※ LH 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체결이 불가함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 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필수	본인 및 세대구성원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우리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취소 처리될 수 있음
④ 주민등록표초본		필수	본인	※ 반드시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성명/관계 등을 전부 포함하여 발급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구성원	• 공고일 이후 ‘공고일 당시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적격심사를 위해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필수	본인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의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포함)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⑥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필수	본인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확인 시 필요하며, 동일 배우자와의 혼인 합산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요청 시 다시 제출해야 함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 현재 혼인 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

해당서류	서류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⑦ 재직증명서 (복무확인서)	선택	본인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분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⑧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선택	본인 및 세대구성원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 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⑨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선택	본인, (예비)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3.28.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⑩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선택	본인, (예비)배우자	• 태어나 입양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주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약속(계약 체결전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 ※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포함
⑪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세대원 나이 증빙서류	선택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또는 만 65세 이상 노약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임을 증빙하고자 하는 경우
⑫ 한부모가족증명서	선택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필수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1961.1.1 이전 출생의 경우 1961.1.1으로 지정) ~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0.) 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⑭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선택	(예비)배우자, 세대구성원	•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4. 계약 시 구비서류, 계약체결 안내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8.10.) 이후 발급본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계약서류	
본인 계약 시	현장계약	① 계약금 입금 확인서류(※ 현장수납 불가) * (사전청약 당첨자) (주택공급금액 + 발코니확장비용 + 선택한 옵션대금)의 계약금 해당 금액 * (본청약 당첨자) (주택공급금액 + 발코니확장비용 + 선택한 옵션대금)의 계약금 해당 금액
		② 당첨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③ 도장 (본인 서명날인도 가능)
		④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설명서(계약 장소에 비치)
		⑤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증빙자료
	전자계약	① 계약자 본인명의 휴대폰 ② 계약자 본인명의 공동인증서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본인 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 (입주자모집공고 시 첨부된 양식 이용)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입주자모집공고 시 첨부된 양식 이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당첨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본, 본인발급본에 한함) 및 인감도장(위임장에 직접 날인하려는 경우)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원본)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주택공급신청 및 계약, 제출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본에 한함)
고령자/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호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전자계약 관련 안내사항

-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체결시, 등기는 전자등기 방식이 원칙이며, 비전자 등기 시 등기소에서는 전자계약서 출력물을 인정하지 않고, 출력물에 거래당사자 등의 인장날인을 요구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10:00~16: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체결 마감시간(16:00) 이후에는 전자계약체결이 불가하오니, 전자계약체결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금확인을 위한 소요시간을 고려하시어 미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10:00~16:00)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계약이 불가하고, 현장 계약 체결기간 내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절차



- 56T 계약세대, 부부공동명의 등 명의변경, 마이너스옵션 선택,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전자계약 체결 후, 부부공동명의, 상속 등 명의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체결된 전자계약의 해제 후 현장계약 재체결 필요)

VIII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도시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주택전시관 및 팸플릿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천 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총주택가격(선택사양품목 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 약 2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정하거나 LH 서울지역본부 판매팀으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 인증서로그인 → 고객센터 → 나의정보 → 개인정보변경]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에대해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따라서, **현장계약 체결 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해당 지구는 투기과열지구이므로 증빙자료 필수 포함)를 사업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후불제 대출안내**(중도금 대출 협약 체결에 따라 대출이 실행될 경우 이자 납부 방법 안내입니다.)
 -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은 수분양자가 중도금 대출계약 시, 입주지정기간 개시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이자)는 공사가 대납하되, 공사가 대납한 이자총액은 입주자가 입주 지정기간 중 입주 시 우리 공사로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대납 이자를 입주지정기간 중 미납 시 입주지정기간 말일부터 연체기간에 따라 미납금액에 연체이자(연행 7.5%, 변동 가능)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수분양자가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을 원할 시, 주택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대출 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일정 등 세부 계획은 중도금 대출 협약이 진행되어 기관 선정 시 추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개인의 신용불량 등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이 불가한 경우나 개인사정으로 대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공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금융기관 선정 불가할 경우 본인 자금으로** 직접 해당 납기일까지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연체이율(연행 7.5%, 변동 가능)이 가산됩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 시 발생하는 제부담금(인지대 및 주택보증수수료 등)은 수분양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이자후불제 금융대출을 하더라도 입주 시 대출한 중도금은 본인자금으로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다만, 전용대출상품 의무가입 대상자는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에 해당하는 전용대출상품에 가입해야하며, 이 때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동시에 수용받을 수 없습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번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안내

- 장애인·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제공대상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의 3급 이상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구분	설치내역		제공대상
선택 시설	현관	1. 마루굽틀 경사로 - 휠체어 통행을 위해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욕실 (1개소)	2. 단차 없애기 -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 줄임	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청각·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3.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 출입구 폭 80cm 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4. 좌식 샤워시설 -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 손잡이 설치 (L자형, -자형 각각)	
		5. 좌변기 안전손잡이(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6. 수건걸이 높이조정(1 ~ 1.2M)	
		7. 뉘눓이 조절 조절 가능한 세면기	
	주방	8. 좌식 싱크대(휠체어 및 의자사용 가능토록 설치)	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청각·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9. 가스밸브 높이조정(1.2M 내외)	
	거실	10. 비디오폰(월패드) 높이조정(1.2M 내외)	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청각·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11. 시각경보기(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12. 야간센서등(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3급 이상 지체·뇌병변장애인
	기타	13. 음성유도신호기 -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장애인·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의 경우 전자계약이 아닌 현장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신청시기 : 현장계약 체결기간 (2026.12.09.(수) ~12.10.(목)) 내 ※ 현장여건(건축 공정 등)에 따라 일부 항목은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1부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지구 및 단지 여건

■ 사업 여건

- 성남복정2 A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행복주택) 주택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고시(제2026-220호, 2026.05.12)로 승인된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성남복정2 A-1BL)”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승인조건 이행, 지자체 의견, 민원 등에 따라 단지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계획,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각종 영향평가)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변경, 보상 및 공사여건 변경에 따라 사업준공 등 추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외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성남시에 위치한 공군비행장으로 인해 비행기 소음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으로 서측에 영장산터널을 지나면 남위례역, 남측으로는 성남여자중학교, 성남신흥초등학교 및 수정구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는 성남신흥초등학교 증설 부지 및 공공용지가 인접하여 있습니다.
- 사업부지 서쪽에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분당 수서간 고속화도로, 수인분당선이 남북방향으로 지나며, 남쪽에는 동서방향으로 지나는 경춘대로, 성남이천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동측으로 근린공원(영구 저류지 포함)과 산성역 포레스티아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 있습니다.
- 지구 서측에는 성남 2030-2단계 재개발지구가 위치하고 있으며 추후 재개발 시 해당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 소음, 분진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추진 과정에서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각종 영향평가 및 인허가 등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단지계획, 각 시설 설치계획, 주변 기반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기반시설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입주 시까지 조성되지 못할 수 있으며, 주변단지 및 기반시설 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단지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분양·행복주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사업추진과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청약상담창구 및 해당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소음, 조망, 일조, 도로, 진입로 등 단지여건 및 주변환경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청약신청 전 아래의 단지 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 지구는 신혼희망타운 건설사업으로서 공공분양, 행복주택이 함께 계획되어 있고 각 소유자별로 대지지분을 공유하며 통합관리사무소(1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의 출입구는 서측(주출입구, 부출입구)에 위치하고, 주변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연계된 별도의 출입구는 없습니다.
- 단지과 인접한 기반시설(공원, 녹지, 도로 등)과 계획과 차이에 따라 단지 경계에 법면 또는 옹벽 등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북측 영장산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 및 경관저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서측 출입구 주위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경관저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내 북측(영장산)은 가공 조경석과 콘크리트 및 패널 옹벽(H:3~17m)이 설치되고 113동, 114동, 115동, 116동, 117동의 후면 발코니에서 옹벽 등 조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 설치되는 법면 또는 옹벽 등은 아파트 단지 내 시설로써, 입주 후 유지관리 의무는 입주민에게 있으며, 저층 세대의 조망 등 경관이 일부 저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에 법면 또는 옹벽 등 시설물이 구조안전성 있게 설치됩니다.
- 단지 내·외 계획고는 추후 실시설계 및 조성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구조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등은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설치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신설/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서측(영장산터널) 도로는 단지주변 간선도로 일부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결정 및 운영·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결정 및 운영 전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시설, 공원, 녹지 및 단지 내외 산책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의 조경석 시공구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단지에 대한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 오류 등 경미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우·오수관로는 분류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수의 경우 단지내 정화조에서 처리 후 사업부지 내 인입된 시 오수관로에 연결 계획하였으며, 단지내 오수처리시설 가동으로 인한 악취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수정화조의 배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있으며, 지붕층에 배기관 설비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수도, 도시가스, 난방,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도시계획시설 등의 변경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인접한 공원으로 인해 소음, 사생활 침해, 경관저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물 옥상에 신재생에너지 시설(태양광 패널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주차장 설치계획

총 주차대수 (세대당)	구분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일반	장애인	전기차
1,075대 (1.2대)	계	-	-	-	995	22	54	3	1	-	-	-	-
	1F	-	-	-	-	-	-	3	1	-	-	-	-
	B1F	-	-	-	497	11	34	-	-	-	-	-	-
	B2F	-	-	-	498	11	20	-	-	-	-	-	-

- 단지 내에는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이 혼합 배치되어 있습니다.
- 118동 근처에 주민공동시설(다함께 돌봄센터, 주민카페, 실내놀이터, 파티룸) 등이 설치되어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8동, 122동 근처에 유아놀이터, 어린이놀이터, 실내놀이터 등이 설치되어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22동 근처에 어린이집 및 하부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등이 설치되어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 관련 법규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의 공공조경 구간이 계획되어 있으며 공공조경 구간 내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녹지 및 산책로가 조성됨에 따라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등 불편이 발생될 수 있으며, 공공조경의 조성 목적을 고려하여 입주민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합니다.
-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안등 및 방범CCTV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문주의 형태 및 마감, 주동 저층부 외부마감은 설계특화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동 현관, 지하출입구, 보행로, 공용시설물, 도로계획 등 공용부분은 현장 여건과 디자인 의도에 따른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 등에 따른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외 도로(보도), 어린이놀이터(물놀이시설 등) 및 운동·휴게공간 등 주민이용시설의 조성으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소음 발생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과 인접하여 설치된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 분리수거대) 주변으로 악취 및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으니 계약 전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전거보관소는 세대수 및 동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 배치되어 있으며, 인접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전면 또는 후면 녹지 내 옥외 연결송수구, 상수도소화전, 매몰형 가스밸브, 소방안전매트(이동식) 설치 구간 등에는 시설물 설치 및 수목(교목 등) 식재가 불가함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등의 불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단지 내 정화조 가동 및 청소 차량 주기적 출입에 따른 악취·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 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향후 시설 운영방안에 따라 단지 내 시설은 지역 주민이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녹지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 및 시설물은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펌프실 및 기계실, 동지하에 집수정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영구배수로 인한 공용 전기요금 및 유출지하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 또는 지상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취입구가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뿔칠로 시공됩니다.
- 단지명칭·동표시·아파트 문양·BI로고·벽체줄눈·외부조명 및 색채는 추후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점 기준으로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 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정리할 예정이며, 공급대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분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의 마감사양은 지하층 및 1층, 2층 이상의 기준이 상이합니다.
- 아파트 엘리베이터 승강장 및 계단실에 환기 또는 채광창이 설치되며 층별·동별·타입별로 여건에 따라 창이 없거나 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동 전면에 연결송수관설비 구조물이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등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부속동 및 일부 공용부에는 입주 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 관리업무를 진행 하며, 준공 및 입주 후 일정기간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가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세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단지 내 도로에는 소방차전용 주차구획선이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설비가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지하 1층(116동, 117동, 118동, 119동 인근)과 지하 2층(101동, 102동, 121동, 122동 인근)에 총 54대(급속충전기 1대, 완속충전기 53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의 기존 설치위치 이동 및 추가 설치는 불가합니다.
-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 공간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유도등 등이 시공되며, 일부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에 충전용 전원설비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까지의 동선, 거리, 충전시설의 종류, 개수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운영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해당 비용(전기요금 등) 부과 및 운영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 동 주변에 지하주차장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인터넷 전용회선 설치가 필수이며, 그에 따른 통신요금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승강기 내부 천장 공기 유입은 환기를 위한 환기팬에 의한 것이며 냉방장치(에어컨)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단지는 얼굴인식 공동현관기(로비폰)가 설치될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정보수집에 동의한 세대에 한하여 얼굴인식 원패스시스템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스마트 원패스 앱 사용의 경우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는 유상으로 제공됩니다.)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 설비인 한전 PAD가 단지 내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인접 세대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출입통제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5동 옥상(지붕층)에 지상파(디지털) 안테나 및 위성안테나, 101동, 103동, 105동, 107동, 110동, 112동, 119동, 121동에 이동통신용 중계기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수신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옥상, 지하주차장 및 PIT에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 중계 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서비스안테나를 지하층 및 옥외에 설치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설치위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설치 장소 및 설치 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가 설치를 원할 경우 입주 이후, 관리소와 협의 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101동~112동, 118동~122동 옥상(지붕층) 및 101동, 104동, 117동, 118동, 122동 입면(외벽)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며, 태양광 모듈 사양 등 현장여건에 따라 동별 설치 면적 변경 및 피뢰보호를 위해 피뢰침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지붕 층에 피뢰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109동, 111동, 112동, 113동, 114동, 115동, 116동, 120동, 122동 옥탑과 단지 문주에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인근 아파트 세대 내부로 빛이 들어올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설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 복리시설, 지하 주차장 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소음,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설치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 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세대에서 인근 동 옥상의 태양광 발전설비, 피뢰침 설비,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 중계 장치 등이 보일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설비로 인해 눈부심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 해제, 해지, 하자 보수 등 민원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출차 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인근 동에 소음 및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지하 주차장, 승강기 내부, 생활자원보관소, 단지 출입구 등에 CCTV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및 통로 등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별도 사생활 보호 시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신속한 주차유도, 주차 가능 공간과 차량 주차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SI 주차유도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무인택배함은 각 동 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 어린이집 및 어린이놀이터(물놀이터 등), 유아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에 근접하여 배치된 세대는 소음, 냄새, 미관저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 단지 주출입구, 단지 부출입구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 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도, 조경공간, 녹지,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식재, 조경시설,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 및 현장여건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자동차 소음 및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단지 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전면, 후면 조경 공간에는 이동식 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사용을 위해 일부 식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전면에는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 및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에 따라 녹지 및 시설 설치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는 단지 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특히 생활자원보관소는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고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1층을 포함한 저층 세대는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 등 조경시설물은 추후 인허가 변경에 따라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생활자원보관소는 동별로 설치되지 않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부여건을 확인한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외의 레벨 차이는 추후 기반시설공사 및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환기탑(D-A)이 배치되어 소음 및 열풍 등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피트층, 계절창고 등 환기설비 가동 시 하부층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주변도로 및 옹벽 등 구조물)

- 단지 내·외부 레벨 차이는 시공 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조물 설계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의 담장, 옹벽 등 구조물 시공구간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 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및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폭 등은 사업추진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가스배관 매립설치로 보도블럭 및 포장면에 가스관로 라인마크가 시공됩니다.
- 계절창고는 동별 세대수 비율기준으로 설치되어 않아 동별 계절창고 수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계절창고는 각 세대별로 지정되지 않으며, 입주 후 자체 내부규정 등에 의해 사용하셔야 합니다.

(식재, 녹지)

- 단지 내 조경식재, 야외시설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관계기관 심의결과 및 시공과정(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 가스 입상라인은 세대별 외벽에 설치되며, 가스입상관 방범시설은 기단부 상단까지 설치됩니다.
- 제연용 급기팬이 지하층에 위치하여 인근 세대의 경우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등이 전달될 수 있으며, 제연용 급기팬 댐퍼는 각 층 세대 승강장 인근에 위치하여 화재 시 바람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의 점검을 위하여 점검구 또는 점검홀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등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청약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구조·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 평가·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자재는 관련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층별·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고, 보일러 배관의 외부 돌출시공으로 강우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유상옵션 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 공사에서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전시품입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기존 마감자재 손상에 의한 하자 등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단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주방가구, 불박이장, 강화합판마루, 공용부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창호, 부대시설 그릴고정창, 부대시설 창호, 레미콘, 아스콘, 콘크리트 벽돌, 숙빈콘크리트블럭, 보차도 경계석, 도로경계석, 인조화강석블록, 오배수용PVC 파이프, 가압급수펌프, 배수용수중모터펌프, 조립식물탱크, 중앙관제장치, CCTV 및 차량출입통제시스템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할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공사 시 세대 내부에는 관련 법규에 맞추어 시공됩니다.
- 세대 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 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냉장고장, 주방가구 등 포함)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 및 정압기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 그릴창 미개방 가동 시 냉방기기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되어 승강로 운행으로 인한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환기설비와 제습기가 설치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 가동으로 전기요금미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아파트 각 층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 내에 환기창은 전층 설치되나, 엘리베이터홀 및 계단실의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상이하여 환기 및 채광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하층)

- 지하주차장 통과높이는(차량 진입 가능높이) 지하 진입층(데크층부분 포함) 2.7m, 그 외층 2.3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 및 제연팬 등이 설치되어 장비 가동 시 일부 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지하층에 전기실, 발전기실, 정화조, 저수조, 펌프실 등 공용시설물이 위치하여 인근 동은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발전기의 주기적 시험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발생하여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므로, 분양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동 지하층의 계절창고의 경우 제습기, 배기팬이 설치되며, 지하층 특성 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및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마감이 없으며 별도의 실(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일부구간 벽체배수관이 설치되며, 인접한 배수 트렌치 및 주차장바닥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 경사로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환풍 및 환기탑 외부 마감은 외장계획에 따라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환풍이 일부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환풍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동 전면, 후면 또는 주변에 지하주차장 환기구, 연결송수관 설비,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상가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정화 및 배출을 위한 단독정화조가 설치되어 있고 정화조용 배기구는 옥탑에 설치됩니다. 옥탑층의 정화조용 배기로 인해 상부 세대 일부에서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 설치된 공동주택 정화조 청소를 위해 작업차량이 주기적으로 단지 내부로 진입할 수 있으며, 작업 시 소음 및 악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 동 계단실, 엘리베이터홀이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입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로 연결되는 통로는 없으며 지상을 통한 이동이 필요합니다.
- 택배 배달용 탑차 출입은 지하 진입층만 가능합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 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 계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습니다.
- 계획여건에 따라 주차계획(지상 및 지하주차장)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대시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중 일부시설의 세부이용에 관한 사항은 행복, 분양주택 입주자 등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대수는 일반형 3대와 장애인용 1대 총 4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주민카페, 피트니스센터, 계절창고, 독서실, 실내놀이터, 파티룸, 골프연습장, 관리사무소, 방재실, MDF실, 경비실(주), 경비실(부), 근로자휴게실 등이 있으며, 여건에 따라 실명칭, 위치, 용도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의 각 실에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등에는 실내가구나 컴퓨터 등 내부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관리사무소, 주민카페, 골프연습장은 바닥 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작은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피트니스센터 탈의실, 근로자휴게실, 어린이집, 실내놀이터는 바닥 난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실내놀이터, 다함께 돌봄센터, 주민카페, 피트니스센터, 경비실, 근로자휴게실, 어린이집, 골프연습장에 냉난방겸용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실내놀이터, 다함께 돌봄센터, 주민카페, 피트니스센터, 경비실, 근로자휴게실, 어린이집의 경우 실외기실에 실외기가 배치되며, 실외기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동 상부에 설치되는 시설의 에어컨 실외기(실내, 실외), 환기유닛 가동 및 오배수소음으로 인한 인접 및 상하세대에 소음, 진동, 먼지 등의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56T 타입 관련 안내] 56T 타입은 하부층의 세대와 연결된 외부로 테라스가 설계되어 있으며, 해당 공간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본 테라스는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특정 세대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임의로 증축, 개축, 지붕 설치 등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테라스 구조상 세대 내부를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므로, 실제 이용에 있어서는 해당 세대의 협조 없이는 다른 세대의 사용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당 공간의 법적 성격과 사용제한 사항을 충분히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 입주자 간 분쟁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테라스의 사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반영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주택전시관,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 설치 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관 중문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현관에 감지기가 설치되지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현관이 실로 구획되지 않아 현관 감지기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창호 상부의 커튼박스는 천장 속 단열마감을 위하여 커튼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공간 및 발코니 수전, 실외기실에 선통통이 설치되는 곳은 거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스마트홈 생활정보기는 일괄 소등(현관 센서등, 현관창고등 제외), 엘리베이터 호출 및 가스 차단 기능을 하며, 화면에는 현재시간 및 외부 날씨(온도, 미세먼지 정보)가 표현될 예정입니다.
- 모델하우스,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의 품귀, 수급·생산불능 및 제조회사의 부도·파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델하우스,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및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 공사에서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전시품입니다.)
- 간접조명(거실 우물천장 테두리) 옵션을 선택한 세대와 미선택 세대의 우물천장 모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타일 및 아트월 나누기(거실, 욕실, 주방 등)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거실 스마트 세대단말기(월패드) 등 설치 부분에 타일 나누기 줄눈이 간섭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등의 설치 위치, 사양 및 수량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감지기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관중문, 드레스룸 옵션 미선택 시 감지기 미설치 등)
- 55A, 55B, 55C형 발코니 및 56T형 다용도실에 세탁기 전원용 콘센트, 보일러용 콘센트, 일산화탄소 경보기용 콘센트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반 전기콘센트 미설치됩니다.)
- 실외기실에는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56T형은 발코니)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침실1에 실내기 전원용 콘센트가 설치되며, 옵션 선택 시 침실1에 실내기 전원용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 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됩니다.
- 최상층 세대 발코니의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 세대는 천장형 또는 벽부형으로 설치됩니다. (56T형은 다용도실)
- 55A, 55B, 55C형 실외기실의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제품(강화합판마루재, 주방가구, 불박이장, 조명기구, 세대분전반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매하는 '직접구매자재' 대상품목으로 본 공사 시 유사한 디자인 및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전기)분전반은 알파룸 도어 후면 벽체에 매립 설치되어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통신)단자함은 현관창고 벽체에 매립 설치되고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 및 옵션선택에 따라 위치 및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시스템에어컨(선택품목)은 거실 월패드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세대에 설치되는 콘센트·스위치의 디자인 및 설치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동작감지기는 1·2층 및 최상층은 외부창호(침실 및 거실의 창호 측면 등) 천장부위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 층의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 천장부 1개소에 설치됩니다. (최상층 발코니 부위는 벽부형 설치됩니다.)
- 전시세대에 설치된 전기 및 통신설비(조명기구, 스위치, 콘센트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용 샘플로서 전기·정보통신 시공사 선정 후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킹시스템 세대단말기(월패드)는 방범서비스(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거실·침실1·침실2·알파룸 조명, 난방온도, 디지털도어록 및 가스밸브차단), 대기전력차단서비스(IoT 콘센트 및 대기전력자동차단스위치 연동), 단지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통제시스템 및 AI주차유도시스템 연동)를 제공합니다.

(마감자재 스펙 관련)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팜플릿 등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관, 팜플릿 등에 적용된 자재 중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나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및 자재는 생산중단 시 동일성능 제품 및 자재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및 다용도실)

- 당해 단지는 개별난방단지로써 각 세대별로 보일러가 별도로 설치되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고,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발코니) 내에 보일러 가스배관, 보일러 연도, 가스계량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수전, 오배수관, 통기관, 스프링클러헤드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설치가구와의 간섭이 발생 할 수 있고, 제원에 따라 세탁기와 건조기의 병렬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또는 발코니) 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 문과 벽 및 기타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탁실 출입을 위하여 출입문을 탈착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 등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다용도실은 비난방구역으로 해당 실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일부 발코니에 선통통,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통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별도 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드레인 및 배관의 위치와 개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동절기 보일러 연도의 결로로 인해 낙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동절기 결로 낙수와 우수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실외기실 등 하절기 온도상승으로 스프링클러 헤드가 오작동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 환기가 필요합니다.
- 세탁기 배치방식에 따라 급수관, 출수관, 전원선 길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보일러 전면은 보일러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공간이므로 세탁기를 보일러 전면에 설치 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용도실 세탁기와 건조기 수직 설치 시 선반을 일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용도실(또는 발코니)에 개별 세탁 건조기 사용 시 온·습도가 상승될 우려가 있어, 결로 및 기타 하자 방지를 위하여 환기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검침계량기가 설치되는 아파트로 교체 비용은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다용도실 등에 바닥 배수드레인, 환기유니트,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 하향식 피난사다리, 에어컨 실외기, 에어컨 매립박스, 손빨래수전, 세탁기용 배수드레인, 배수입상관, 세탁기용 수전, 가스미터기 등 마감자재는 생산업체의 사정에 따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설치 위치, 사양, 용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테라스에는 동파방지 및 하자에방을 위하여 개별 수전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내 보일러, 가스계량기 등 기본시설물이 설치되며 가전제품 설치 시 유지보수 공간 확보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전제품 구입 및 배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외기실)

- 세대 내 하향식 피난구의 경우 원활한 피난을 위해 상·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가 일정 간격 떨어져 시공됩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실외기실에는 여단이문이 설치될 예정으로 외기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 시 하부로 대피할 수 있는 피난로이므로, 하향식 피난구에 물건 적재 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이 불가하며 원활한 피난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는 실외기실은 물청소 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 필로티 및 부대시설 직상부 세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세대에는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해당 공간의 창호 형태 및 문의 재질이 상이 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이며, 규격용량 이외의 실외기 설치 시 공간이 협소할 수 있으며, 좌우 연결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 공간은 외부공간으로 옷, 가구, 책, 여행용 가방 등을 보관 시 훼손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외기 루버 미개방 에어컨 가동 시 화재 우려가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 바닥에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약 30mm가 바닥에서 돌출됩니다. 실외기실 단차 높이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층별 교차로 시공됩니다.
- 실외기실 천장에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각 층별로 설치 위치가 좌우 교차로 시공되며, 측벽에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됩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이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사용 시 반드시 실외기실 그릴을 개방한 상태에서 사용바라며, 미개방 사용 시 에어컨 성능저하 및 온도상승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환기)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슴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 급·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는 거실과 침실, 주방 등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급배기 디퓨저 위치는 실내마감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덕트 배관 등이 실외기실 천장에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가전제품 설치 시 간섭이 될 수 있으며, 내부마감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의 설치위치는 상부층 하향식피난구 위치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세대마감)

- 세대 내 가구(주방가구 포함)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 상 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냉장고장, 주방가구 등 포함)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 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몰딩, 목문을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벽지(도배) 공법상 초배지+정배지 봉투 바름 시공 시 벽면과 도배지가 밀착되지 않으며, 천장도배지는 습기에 의한 부분적 들뜸(울음)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 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세대 아트월 부위는 경량벽체인 부분은 별도 보강하여 경량벽체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구조벽 외 조적벽체, 경량벽체 등이 시공될 예정입니다.
- 거실 아트월 및 주방벽 하부는 걸레받이가 미시공됩니다.
- 세대 천장고는 2.3m로 시공오차에 의해 세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가구 현지, 레일 등 가구공사용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 공사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등)와 접해 있는 벽, 바닥, 천장은 원활한 시공을 위해 별도의 마감이 없으며, 주방가구와 접해있는 벽체는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세대 내 타일 및 아트월 나누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 발코니, 욕실, E/V홀 등의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 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됩니다.
- 세대 내 창호를 가구 등으로 임의로 가릴 시 누수, 결로 등의 문제를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방 관련 법에 따라 일부 세대의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과 발코니 천장에 차압감지관 박스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중문, 거실 팬트리, 침실1 드레스룸 등 구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팸플릿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침실2 붙박이장 설치 시 온도조절기와 네트워क्स위치의 위치가 상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55B 발코니 천장에 전열교환기 배관 덕트가 노출 통과합니다.
- 56T 침실1은 당해층 및 위층 발코니의 보일러, 실외기, 배수배관으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56T 발코니 단차 위치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56T 외벽 상부로 가스배관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 56T 평면구조상 일면만 개방되어 자연환기가 불리하며 결로현상 발생이 높으므로 각 실별로 생활시 내부 환기시스템을 이용한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함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신청 및 계약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실에 설치되는 통합형 온도조절기 및 네트워क्स위치는 동일한 색상일지라도 제조사별 제작 및 도색방식이 상이하여 서로 이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방)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합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또는 레인지후드 배기덕트 등과 겹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이 일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거나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방 상부장 내부에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모델하우스와 달리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 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바닥이 보일 수 있고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하며 침실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드레스룸 및 팬트리 등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 또는 침실)에 의해 통합제어 됩니다.
-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하이브리드쿡탐용(가스차단/전기차단)으로 설치됩니다. 전기쿡탐 옵션 선택시에도 주방 천장에 가스감지기가 설치되며, 상부장 하부에 가스 공급용 배관 및 가스차단밸브 설치 후 캡마감 처리되며,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배기는 당해층 직배기방식으로 세대 레인지후드 작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아일랜드식탁, 주방벽, 쿡탑, 냉장고장 등 구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팸플릿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방싱크수전의 경우 터치시 절수수전으로 일부 정전기의 우려가 있습니다.
- 냉장고 뒷벽 하부에 냉장고 얼음정수기를 위한 급수관이 벽면에 설치되며 도배 마감처리 됩니다.
- 레인지후드는 당해층 배기용 레인지후드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레인지 후드 상부장내 레인지후드 배관 및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상부장 후면에 가스배관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 핸드터치식 절수형 수전(디자인형), 음식물탈수기 등은 제품의 사양(제조사, 형태, 규격, 색상, 하드웨어 등) 및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싱크볼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합니다.
- 주방하부장내 온수분배기 가림판은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사 시 온수분배기, 싱크배수관, 절수기 컨트롤박스 등이 설치되어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 핸드터치식 절수형 수전(디자인형), LNG 가스탐지부, 가스배관 및 자동식 가스차단밸브 설치 위치, 레인지후드, 기계환기 디퓨저, 거실 온도조절, 거실 에어컨 냉매배관 매립박스, 시스템에어컨 등 마감자재는 생산업체의 사정에 따라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설치 위치, 사양, 용량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주방의 당해층 배기로 인하여 인근 세대로 냄새가 역류할 수 있으며, 강풍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대욕실)

- 욕실 출입문은 합성수지 재질이며 욕실 천장재는 ABS 판넬로 시공되며 천장에 점검구 시공 예정으로 욕실 출입문 개폐 시 공기압차로 인한 천장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은 습식욕실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욕실 일부공간은 바닥난방이 설치되며, 인근 온도조절기(침실)에 의해 통합제어됩니다.
- 욕실천장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동별 세대배치에 따라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욕실팬 작동 직후에 댐퍼가 열리는 동안 운전음(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부부욕실 내 레인형 샤워기 이용 후 샤워헤드 내 잔류수가 떨어질 수 있으며, 샤워기는 절수형으로 설치되어 수압이 다소 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욕실 양변기는 관련법에 따라 절수형이 설치되므로 세정력이 다소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장 뒷면의 벽체 타일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악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욕조는 측면수납형으로 시공됩니다.

(가전제품)

- 세대 내 기본설치 품목(옵션 선택 시 해당 없음)인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되며, 거실에서 냉매박스 위치는 타입에 따라 위치가 다를 수 있으며,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에어컨용 콘센트는 미설치되며 실외기실에 실외기 전원용 스위치 박스가 설치됩니다.
- 거실 에어컨 실내기 전원은 냉매박스 내 매립배관을 통해 공급되므로 별도의 전원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옵션)

- 시스템에어컨 설치세대는 천장의 스프링클러헤드 배치에 따라 위치가 조절될 수 있습니다.
- 공간확장형 **1**-1 선택 시 온도조절기 및 네트워크 스위치는 1개만 설치됩니다.
- 공간확장형 **1**-1 , **1**-2 선택 시 천장 스프링클러 헤드 개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의 경우, 주방가구 상부장에 설치되는 주방용 자동식소화기는 현장납품 또는 소방준공필증을 위해 상부장 없이 기설치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의 경우, 주방용 자동식소화기는 입주자가 주방가구 상부장 부착 시 입주자 요청에 따라 시공사가 해당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입주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방용 자동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추가 시 거실 및 침실1의 에어컨 전원용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전원은 실외기 및 냉매박스를 통해 실외기실에 매립시공될 예정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좌우타입에 따라 발코니 및 실외기실 등에 관련 배관이 노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위치는 실제 시공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시장 상황의 변화, 기타 사유 등으로 당초 계약모델을 공급함 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등 이상의 타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시스템에어컨(옵션)은 무선 리모콘을 통해 작동되며 세대 내 월패드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의 경우, 욕실의 급수 매립박스 및 일부 설비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추후 입주자 설치 시 유지관리에 문제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적절한 배기 팬 설치로 인해 외부 오염된 공기 또는 냄새가 욕실 내부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사항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변경, 관계기관의 행정명령, 매립폐기물 처리, 오염토 처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평면도 상의 치수는 중심선 기준(발코니의 경우 외곽선 기준)으로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검토를 위하여 샘플하우스(현장 견본주택)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모형은 공급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및 폐기할 예정입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사업단지를 방문하여(현장은 출입불가)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의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시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 마감품질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의 외관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시설은 지자체 의견 등을 참고하여 국공립 또는 외부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운영방식에 따라 단지 외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종합보육센터 등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의 각 항목에 대한 설치는 최초 계약신청 접수분에 한해 가능하며, 계약 전 필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 및 거주자의 생활환경 차이 등으로 층간, 세대 간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팸플릿,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잔금완납 포함)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을 위해 한전주 또는 한전패드가 단지 내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인접세대의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시공 중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기존 한전주 및 통신선로(가공)는 철거나 이설 없이 존치될 예정이며,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의 인허가 변경, 학교설립 관련 법령 및 지침 변경, 학생수용여건,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학교설립(개교) 및 대상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성남신흥초 배정 예정이며, 중학교는 수정·중원중학군내 배정 예정입니다. 입주시점에 학생배치 계획이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성남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공사는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성남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단, 피트니스센터에 운동기구(의자, 소파 등 이동식가구 등 기타 비품은 일체 제공되지 않음)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협의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며, 추후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로 최초 입주시의 주택관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LH)가 선정하고, 추후 분양세대가 과반수 이상 입주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 관리기관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공주택사업자(LH)가 협의하여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가 주택을 운영·관리하게 됩니다. 관리기관 후,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주택사업자(LH), 임차인대표회의(구성 시)가 상호 협의하여 단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분양 계약자 및 임차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5.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법」 제39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녹색건축 인증 기준」 제3조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
		중량충격음	★
		화장실 급배수소음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외부소음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	★★
구조관련 등급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공용부분	★★
	내구성		★★
환경관련 등급	조경(외부환경)	생태면적을	★★
		자연지반 녹지율	★★
	세대내 일조확보율		★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자재의 적용	★★★
		단위세대의 환기성능확보	★★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음식물 쓰레기 저감	-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여부	★★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에너지절약	에너지성능	★★★★
생활환경 등급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 사용금지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보행자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교통부하저감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
		도시지역및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
		공용부분	★★★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화재 · 소방 등급	방법안전	방법안전 콘텐츠	★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 타당성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화재 · 소방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피난설비	★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특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6.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외벽(직접면)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지붕(직접면)	적용
	지붕(간접면)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에너지 절약 설계	단열조치 준수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방습층 설치	
대기전력차단장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스마트생활정보기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고효율LED - 조명설치		적용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난방설비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절수형설비 설치		적용
고효율설비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적용
	고효율 전동기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7.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단수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구 분		총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260,275,299
	방음시설 설치비	-
	기간이자	15,581,081
	필요적 경비	-

			그 밖의 비용	208,597
			계	276,064,977
건축비	공사비	토목	토공사	8,483,886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1,512,554
			석축공사	44,462
			우·오수공사	489,325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9,581
			도로포장공사	247,754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17,200
			정화조시설공사	151,953
			조경공사	7,007,671
			부대시설공사	120,883
			계	18,085,268
		건축	공동가설공사	2,714,462
			가시설물공사	4,734,269
			지정 및 기초공사	340,438
			철골공사	65,980
			철근콘크리트 공사	30,356,502
			용접공사	-
			조적공사	1,500,391
			미장공사	3,146,494
			단열공사	3,051,597
			방수·방습공사	2,528,747
			목공사	3,547,136
			가구공사	391,138
			금속공사	1,078,804
			지붕 및 흙통공사	147,814
			창호공사	5,042,856
			유리공사	999,487
			타일공사	2,254,447
			돌공사	4,000,746
			도장공사	1,928,923
			도배공사	810,132
			수장공사	998,448
			주방용구공사	-
			잡공사	838,699
			계	70,477,510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1,024,177
			급탕설비공사	732,892
			오배수설비공사	5,237,493
			위생기구설비공사	2,188,587
			난방설비공사	3,035,030
			가스설비공사	2,555,344
			자동제어설비공사	-
			특수설비공사	136,899
			공조설비공사	2,595,917
			계	17,506,339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8,358,319
			정보통신공사	4,066,486
			소방설비공사	9,764,167
			승강기공사	719,403
			계	22,908,375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4,849,177
			이윤	9,358,303
			계	14,207,479
	간접비		설계비	2,771,897
			감리비	1,953,818
			일반분양시설 경비	743,869
			분담금 및 부담금	760,990
			보상비	-
			기타 사업비성 경비	2,985,139
			계	9,215,713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43,102,942
합계			471,568,604	

■ 택지비 감정평가금액 산출내역(천원 이하 절사 표기)

감정평가금액(산술평균액)	가. ㈜나라감정평가법인	나. ㈜세아감정평가법인
302,777,165천원	303,155,164천원	302,399,166천원

8.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 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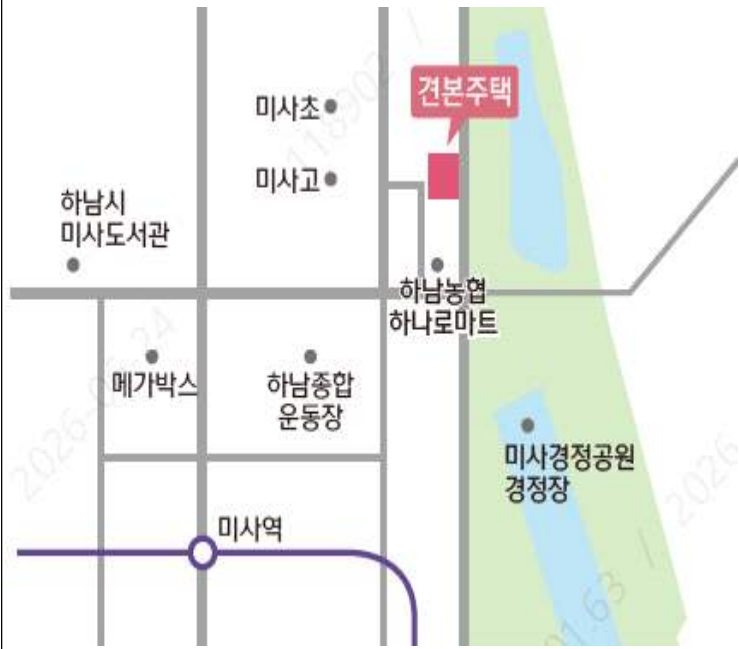
항 목		금액
택지비 가산비	방음시설 설치비	-
	기간이자	18,125,406
	기타비용	242,660
	계	18,368,066
건축비 가산비	법정초과복리시설설치비용	3,263,379

	공동주택성능등급 가산비		1,214,409
	바닥충격음저감주택		-
	인텔리전트 설치비용	홈네트워크	3,807,459
		에어컨냉매배관	1,283,496
		초고속통신특등급	652,555
		기계환기설비	1,083,715
	친환경주택건설비용		2,512,074
	법령개정에 따른 추가건설 가산비	전기자동차충전시설	46,934
		기타비용	209,508
	지하주차장충고증가추가비용		280,777
	설계비		257,764
	감리비		9,792,037
	기초지반공사비	말뚝박기공사비	667,969
		암석지반공사비	12,507,845
		흙막이및차수벽공사비	3,358,682
지하공사특수공법		-	
안전관리비		937,294	
사업승인부가조건 가산비		8,265,575	
계		50,141,472	

9.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성남복정2 A1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120-82-0973)	[대표사] (주)케이알산업(126-81-05325) [공동이행사] 동성건설(주)(308-81-04379)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대표사]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공동이행사]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주) (주)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 [분담이행사] (주)서영티이씨

10. 주택전시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성남복정2 A1BL 주택전시관	
	■ 위치안내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941-1 ※ 주택전시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길 : - 버스노선 : 미사동입구. 한강유역환경청 / 한강유역환경청.미사고등학교. 미사가람마을 하차 - 일반버스 : 1-4, 89, 2000-2 - 마을버스 : 3, 10, 미사-01 - 직행버스 : 3000 ■ 운영기간 : - 사전청약 당첨자 : 2026.08.21.(금) ~ 2026.08.24.(월) [사전예약제] ※ (관람예약필수) 사전청약 당첨자는 관람을 원하실 경우, 예약기간[‘26.08.12.(수) 10:00 ~ 08.19.(수) 16:00] 내에 사이버 견본주택(lhbj2-a1.co.kr)의 팝업을 통해 관람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예약팝업의 경우, 예약기간에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 일반 관람자 : 2026.08.25.(화) ~ 2026.08.30.(일) [예약 없이 관람 가능] ※ 해당기간 중 주말 개관 ■ 운영시간 : 10:00~17:00
사이버 견본주택 (PC · 모바일)	분양문의
■ 주 소 : lhbj2-a1.co.kr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주택전시관 : 031-699-2006 (평일 10:00 ~ 17:00)



서울지역본부